



세월 속 언론



일본 언론의 인격권
침해에 관한 판례동향

Vol.131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언론 중재

증권가 정보지(“찌라시”)
내용을 보도한 언론의
법적 책임

뉴스현장에서
바라본 재난보도



2014 Summer

기자의 취재 현장 방문
주거침입인가 아니면
정당한 취재활동인가?

외국의 재난보도
기준 및 보도사례



인쇄 2014년 6월 27일
발행 2014년 6월 30일
등록 1981년 10월 14일
등록번호 서울중.바00002
발행인 박용상
편집인 오광건
인쇄인 박인성
발행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전화 02-397-3114
FAX 02-397-3069
www.pac.or.kr
편집·인쇄 비주얼트랜드 02-517-5450

편집위원

심석태 SBS 국제부장
이선민 조선일보 여론독자부장
이영진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8중재부 위원 / 변호사
황용석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장

* 본지는 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합니다.

* 이 책에 게재된 원고의 내용은 우리 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에 수록된 글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언론 중재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Vol.131

2014 Summer

CONTENTS

FOCUS ON MEDIA

- 06 세월 속 언론 · 함석천
- 14 뉴스현장에서 바라본 재난보도 · 박철홍
- 18 외국의 재난보도 기준 및 보도사례 · 유승관

칼럼

- 28 누구를, 무엇을 위한 알 권리인가 · 권석천

사건 속 법률

- 32 기자의 취재 현장 방문 주거침입인가 아니면 정당한 취재활동인가? · 김재협

판례토크

- 42 범죄피해자 관련 보도 유감 · 이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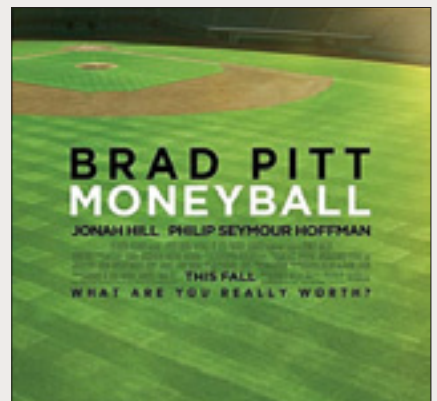
MOVIE WITH LEGAL MIND

- 46 심판(審判) : 판단(判斷)과 결정(決定) · 김성순

42



46



기고문

- 52 일본 언론의 인격권 침해에 관한 판례동향
- 최근의 최고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 고철웅
- 60 증권가 정보지(“짜라시”) 내용을 보도한 언론의 법적 책임 · 임상혁

해외통신원 기고

- 70 유럽의 언론은 위기인가?
: <미디어 다양성을 위한 유럽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 김세환

고충처리 노트

- 82 고충처리, 그리고 반론보도청구 · 허중혁

조정중재 현장

- 88 편작이 인정된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제도
2013년 조정성립률 91% 경제적 성과 718억 원 · 김순중

70



82



세월 속 언론



글 함석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1. 시작하며

재난은 언제든 닥칠 수 있다. 재난은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기 어렵다. 언론 역시 미리 보도를 준비할 수 없다.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재난 상황을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알려야 할 책무는 역시 언론에 있다. 재난 상황이 파악된 후에는 사고 원인과 대책에 대한 심층 취재를 해야 한다. 이 역시 언론의 본분이다. 그런데 이번 해난사고 때는 시초부터 언론에 대한 비판 일색이었다.

신속성과 정확성, 이 두 가지야말로 기자들이 취재현장에서 늘 마주하는 선(善)이다. 둘 다 선(善)이긴 하지만, 취재 현장에서 둘 다 동시에 챙기기는 쉽지 않다. 현장을 뛰는 기자나 기사를 골라서 편집하는 데스크나 누구도 이 강요된 선택 앞에 마음이 편



침몰하는 세월호 모습(출처 : 서울신문, 「기적은 없는가...」, 2014년 4월 17일자 1면)

할 수 없다.

“기자는 사건의 맨 앞에 한 다리를 들고 불안하게 서 있고, 법관은 사건의 맨 뒤에 골치가 아파서 머리를 싸매고 앉아 있다.” (윤재윤 외 1, 언론분쟁과 법, 23쪽)

모든 말을 다 들어주고 모든 증거를 다 받아주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연된 권리는 권리가 아니다’라는 말에 투영된 것처럼 재판 역시 신속을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대비해 보면 취재 현장이나 법정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언론 문제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나로서도 이번 재난보도를 보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래도 언론이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기자들이 여전히 현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MBC 5월 12일 기자 121명 세월호 보도 반성 성명서, 5월 15일 유가족 만난 KBS 기자들 고개 숙이고 눈물로 사죄, 중앙일보 5월 16일 “세월호 부정확한 보도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언론 본연의 모습을 되찾겠다고 다짐하고 있어서 그 반성이 헛돼 보이지 않는다.



중앙일보의 세월호 보도 관련 사과보도(출처: 중앙일보, 「세월호 부정확한 보도 사과드립니다」, 2014년 5월 16일자 2면)

이번 사건에 대한 언론의 태도를 보면서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 때가 떠올랐다. 그때도 무리한 취재, 속도 경쟁에 대한 비판이 드셨다. 한국기자협회는 그 비판에 고개를 숙이고 2003년 재난보도준칙을 공표했다. 이번 재난을 계기로 한국기자협회는 5월 현재 다시 한 번 재난보도준칙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에도 비슷한 반성이 있었고 보도 기준까지 정립하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 보인다. 기자들이 이번처럼 대구모로, 그리고 언론사 구분 없이 차례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인 적은 없었다.

그리고 나는 그 진정성을 믿는다. 그래서 희망이 보인다. 아까운 어린 생명들이 꺼져 갔고, 그들을 그렇게 만든 부끄러운 어른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진정성이기에, 과거 그 어떤 재난보다도 무게감이 가슴을 깊숙이 눌러온다. 그냥 허튼소리로 들리지 않고, 나 역시 아픈 세월 속에 반성하면서 어렵게 이 글을 쓴다.

2. 언론이 추구할 가치들

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언론을 바라본다.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과 ‘인격권 보호’라는 측면이다. 두 가지 모두 헌법이 인정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서로 공존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실은 두 가치가 조화를 이룰 때에 언론의 자유가 더 확충된다. 바른 보도를 하는 언론이 인격권 침해에 따른 책임을 걱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과정을 이미 경험했다.

하지만 두 가치는 종종 충돌한다. 미디어 발달로 언론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로 줄곧 두 가치가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법원 판결 역시 어떤 때는 언론의 자유 쪽으로, 어떤 때는 인격권 보호 쪽으로 기울었다. 그래도 우리 역사에서 지금 이 순간이 이 두 가치의 균형이 제일 조화롭게 이뤄지고 있는 때라고 생각한다.

20세기 초중반까지 언론의 자유보다는 침해에 대한 보상이 법의 관심이었다. 1890년 미국에서 Warren과 Brandeis가 ‘The Right to Privacy’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미국에서 프라이버시(privacy) 침해를 독립한 불법행위(torts)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기 시작했고, 유럽에서는 명예, 초상, 성명 등의 인격적 권리를 포괄하는 인격권이라는 개념을 상정하고 그 인격권 침해를 불법행위로 구성했다. 쉽게 말해서 법이 바라보는 언론은 ‘공표하지 말라’는 금지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20세기 초중반까지 끊임없이 전쟁이 이어졌고 전쟁 후에는 냉전이 이어졌기 때문에 언론을 자유보다 금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당시로서는 자연스러웠을 수도 있다. 전쟁과 냉전이 언론을 위축시켰다.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사상의 자유 시장(free trade in ideas)’이라는 말은 1919년 미국연방대법원의 Holmes 대법관이 이야기한 소수의견에 불과했다. 1960년대 반전 분위기와 냉전에 대한 반성으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다양한 법이론, 그리고 화려한 수식어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위축 효과(chilling effect), 숨 쉴 공간(breathing space) – 언론의 자유라고 하면 지금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들이 이때부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언론의 자유, 인격권 보호에 대한 연혁을 말하는 이유는, 재난보도라는 영역도 우리

에게는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할 영역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어서다. 나 역시 선지자적 견지에서 무슨 기준을 제시할 입장이 되지 못한다. 이 글을 부탁받으면서 거창한 뭔가를 꺼내놓을 재주는 없고 예전에 썼던 줄문에 감상 정도를 엿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주로 초상권에 대해 과거에 썼던 글을 정리하고 간단히 결론을 맺고자 한다(줄고는 ‘초상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법리 전개’, 법조, 2006년 12월).

3. 법의 기준

초상권 침해가 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기준은 다양하다. ‘초상’이라는 개념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 글에서 쓰는 초상의 의미는 재난보도와 관련해서 쓴다는 점을 고려해서, 보도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의 특성까지 모두 포함하는 아주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바란다. 단순히 얼굴, 이름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초상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촬영거절권, 공표거절권, 그리고 초상영리권이다. 영리 목적으로 재난보도를 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 가운데 초상영리권은 접어두기로 한다. 주로 촬영거절권과 공표거절권이 문제 될 것이다.

1) 촬영·작성 단계

촬영거절권부터 말하자면, 촬영하고 공표되지 않더라도 사람은 무단으로 촬영되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므로 함부로 촬영되는 것, 즉 무단촬영 자체만으로도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보고 정립한 개념이다. 인터넷과 저장수단의 발달로 인해 촬영을 하면 언제 어디서 공표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더 커졌다. 이런 시점에 갈수록 이 권리는 중요해지고 있다. 다만 촬영거절권에 대해서는 촬영되는 것만으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사람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침해 여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주관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봄날 오후 야구경기장을 찾아 야구경기를 즐기는 관객은 자신이 환호하는 모습이 방송카메라에 촬영되었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 고통을 느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그 관객이 평일에 무단결근하고 경기를 관람하고 있었다면 촬영만으로도 고통을 느낄 여지가 있다. 또한, 공원에서 가족사진을 찍는 사람은 일단 왕래객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고, 그 후 왕래객의 목시, 혹은 명시의 승낙이 있어야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다면, 촬영하는 사람의 촬영에 대한 이익(자유롭게 공원에서 가족사진을 찍을 자유)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촬영거절권으로서의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기준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사적인 공간에서 무단 촬영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초상권 침해가 된다. 집에서 활동하는 모습, 출입이 통제된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경우처럼 누군가 그 모습을 촬영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사적 공간에서의 촬영은 사적인 영역에 대한 통제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것이므로 촬영 자체만으로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공원, 개방된 등산로, 스포츠 경기장, 시위·집회 현장 등 누구나 촬영할 수 있고, 촬영을 예상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은 촬영거절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이론 있음). 초상권자가 우연한 기회에 공공장소에서 공적인 장면의 일부로서 통상 기대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촬영의 대상이 된 것이라면 촬영거절권으로서의 초상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공공장소에서 촬영하는 것은 이미 공개된 사항들을 기록하는 것이고, 누구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일어난 일을 묘사하거나 기록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장소라도 사적인 활동이 있을 수 있고 사적인 사항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봐서 공공장소에서의 공공성보다 사적인 사항에 초점을 두고 촬영한 경우라면 촬영거절권으로서의 초상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유별나게 여자 다리를 찍는 사람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 또 한 가지, 공공장소의 촬영이라도 초상권자가 촬영을 인지하고 촬영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촬영거절권으로서의 초상권이 작용한다. 이 경우에는 촬영에 대한 정신상 고통이 외부에 표출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2) 공표 단계

공표거절권은 초상권의 핵심이고, 기준이 명확한 편이다. 초상권 침해 여부는 초상이 공표된 후에야 문제 되기 때문이다.

공표거절권은 주로 부정적인 보도와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 부정적인 보도에 동의 없이 초상을 사용한 이상 초상의 촬영이 평온하고 공연하게 이루어졌다고 해도 초상권 침해가 된다. 따라서 공공장소에서 이미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혹은 이미 공표된 자료라고 해도 부정적인 보도와 함께 사용한 경우 공표거절권으로서의 초상권 침해가 된다.

공공장소에서 통상 사용 가능한 방법으로 얻은 초상을 비방 목적 없이 시사보도에 사용하는 것을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공개된 장소에서 통상 사용 가능한 방법으로 획득한 정보를 시사보도에 사용하는 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해서 볼 수 있는 공적인 기록이나 이미 공개된 자료를 공표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사람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일상생활의 모습이 공개되고 생활상이 어느 정도 노출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집에서조차 이웃에게 노출되는 일상이 있다. 논의는 있지만, 공공장소에서 통상 사용 가능한 방법으로 얻은 초상을 비방 목적 없이 시사보도에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만 촬영거절권에서 말했던 예외, 말하자면 공공장소라도 공공성보다 사적인 사항에 초점을 두고 촬영한 경우라면 촬영거절권으로서의 초상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점과 공공장소라도 초상권자가 촬영을 인지하고 촬영을 거절했다면 공표까지 거절한 취지로 봐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동의

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 동의는 명시적 동의가 제일 확실하지만, 추정적 동의, 암묵적 동의도 가능하다. 실생활에서 동의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어떤 경우에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과거에 많은 선례가 있었다.

4. 적용과 하고 싶은 말

논점과 장소를 좁혀서 생각해 본다. 팽목항과 진도실내체육관은 공공장소일까, 사적인 공간일까. 그 어느 쪽이라고 단정하기 쉽지 않다. 전체적으로는 공공장소와 사적인 공간



유가족이 머문 진도체육관의 모습(출처: 미디어오늘, 「세월호 35일 "립글로즈 바르고 나갔던 가시내가 왜 안와"」, 2014년 5월 21일자)

이 혼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항구, 실내체육관은 공공장소다. 그래서 그곳에 드러난 유가족이 모습, 구조를 기다리는 가족의 모습은 공공성을 띤다. 하지만 이불을 깔고 잠을 자고 식사하는 공간은 사적 영역이다. 이처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혼재하지만, 앞에서 본 기준에 비춰보면 그 구분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 신속성이라는 가치를 내세워 그 기준을 깨지 말아야 한다.

가족이 오염하는 모습, 친구의 죽음을 알고 혼절하는 모습은 어떤가? 공적인 슬픔을 전파하고 재난 후유증을 알린다는 측면에서 공공성을 가진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적인 영역이 더 강하게 지배한다. 아무리 공공장소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오염하는 모습, 혼절하는 모습은 그 사람 개인에 관한 일이다. 이 부분은 법리 이전에 인간에 대한 애정이라는 측면에서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선정적인 장면이나 격양된 기자의 목소리보다는, 현장을 지키며 눈물을 감추는 경찰의 모습, 시신을 운구하는 발자국 소리, 불안한 부모의 얼굴,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부모의 흐느낌만으로 현장감을 전했던 지난 4월 20일 CNN 보도를 주목하게 된다.

그래도 여전히 언론은 '신속'에 대한 압박감을 떨칠 수 없다. 다양한 매체에서 시각, 음성, 그래픽까지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된 현대 세계에, 신속의 압박감은 그 강도를 더해 가는 것 같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언론이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한 재난보도에서 신속과 정확 가운데 어떤 선(善)을 우선



세월호 관련 CNN 보도(CNN, 「Children's bodies recovered from ferry」, 2014년 4월 20일, <http://edition.cnn.com/video/data/2.0/video/world/2014/04/20/nr-lah-pkg-ferry-bodies-recovered.cnn.html>) 캡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답을 찾기가 쉽지도 않다. 하지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대구모 인명 피해, 그 때문에 온 국민이 마음 아파하는 재난 보도에는 속도보다 정확성을 우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서술형 문자가 아닌 직관적인 사진, 영상으로 현장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세상에서 전달의 속도감과 감정의 현장성 때문에 오보와 트라우마는 예전에 비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파급력을 가진다. 그리고 그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 이 점을 상기해야 한다. 속도 경쟁보다 정확을 기했으면 한다.

끝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사실 진리는 단순한 곳에 있다. 여러 기준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기준은 '동의'다. 법은 '동의(同意)'라고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공감(共感)'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다. 현장에서 기자들이 아픔을 겪는 재난 가족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공감을 얻는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복잡한 법리 자체를 머릿속에 둘 필요가 없다. 명시적 동의건, 추정적 동의건, 암묵적 동의건 모두 공감(共感)이라는 말 속에 답이 있다.

아이들이 우리에게, 특히 언론에 전한 메시지는 자명하다. 기자들이 성명을 통해 반성하고, 영정 앞에서 눈물 흘린 이유도 바로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보낸 메시지 때문이었다. 나 역시 부끄럽다. 이런 글을 쓸 자격이 있는지 계속 되물었다.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번 재난은 우리 모두에게 큰 전환점이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뉴스현장에서 바라본 재난 보도



글. 박철홍
연합뉴스 광주전남취재본부 기자

“지금 속보 떴어.”

침몰하던 세월호에서 승객이 보낸 한 줄의 메시지가 현장에 있던 기자에게 참 아프게 다가온다. “조금만 빨랐더라면...”, “구명조끼 입고 탈출해야 한다는 속보를 띄웠더라면...”. 비록 결과론적이지만 뒤늦은 후회가 밤잠을 설치게 한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언론보도의 행태를 두고 비난이 많다. ‘전원구조’라는 해명조차 할 수 없는 오보, ‘사상 최대의 구조작전’이라는 사실이지만 진실은 아닌 기사가 실종자 가족은 물론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첫날부터 40여 일 이상 머물며 사고해역, 팽목항, 체육관, 정부 브리핑 장소까지 여러 현장을 지킨 기자로서 실종자 가족과 국민에게 또 한 번의 좌절을 안긴 오보와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가지 못한 기사에 책임을 느낀다. 그러나 ‘속보보다는 정확성’, ‘특종보다는 인격권보호’로 귀결되



실종자 가족들이 머무는 진도군 팽목항(연합뉴스 제공, 「세월호참사」 안개 낀 팽목항 하늘, 2014년 5월 22일자)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되는 학생들(연합뉴스 제공, 「〈여객선침몰〉 구조된 학생들」, 2014년 4월 16일자)

는 외부의 쓴소리에 쉽사리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은 것은 신속한 한 줄의 기사가 소중한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뒤늦은 후회 탓이다. 현장에서 급박한 상황 속에서 매번 딜레마에 시달리는 기자들에게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재난보도준칙의 재확인보다는 언론사를 비롯한 일선 기자들의 혼련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혼란, 분노…사실, 진실

16일 오전 사고발생 소식을 듣고 도착한 팽목항은 아수라장이었다. 비교적 이른 시간에 현장에 도착한 덕분에 첫 구조선에서 내리는 승객들을 인터뷰하고, 사진·영상 취재를 할 수 있었다.

물에 흠뻑 젖은 남학생에게 마이크와 수첩을 들이밀며 물었다. “사고 당시 상황이 어땠나?”, “배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잘 모르겠어요. 팽하는 소리도 들렸고… 선내방송으로는 계속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는 방송이 나왔어요”, “아직 배 안에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었는데… 계속 움직이지 말라고 방송하고….” 단원고 학생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다. 그 순간 ‘전원구조’라는 속보가 올랐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전화기를 붙잡고 소리쳤다.

“아직 사람들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전원구조 아닙니다.”

혼란이 분노로 바뀌는 건 순식간이었다. 실종자 가족과 자원봉사자보다 더 많은 숫자의 국내의 취재진이 좁은 팽목항에 몰리면서 혼란은 더 가중됐다. 작은 소란과 목소리에도 수십여 대의 카메라가 몰려들었고, 참다못한 실종자 가족은 현장 기자들에게 비난을 쏟아냈다. 몰려든 언론사들의 경쟁은 남을 밟고 올라서려는 선동으로 변질됐고, 팽목항에서 기자들은 스스로의 과오로 설 자리를 잃어갔다. 실종자 가족인 척하거나 그들의 편에 선 듯 행세하던 기자들은 다시금 ‘음모론’을 ‘의혹’으로 포장해 보도하다 시간의 흐름이 드러내 준 진실에 다시 내쫓기듯 현장을 떠났다. 급박한 상황에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내보낸 ‘전원구조’의 오보는 현장 기자들의 ‘자격지심’을 심어 줬다. “빨리 쓰기보다는 정확히 쓰라”는 각 언론사 내부 지침에 정부 당국의 입에 의존하는 보도가 쏟아졌다.

당연한 귀결로 이번에는 ‘사상 최대 수색’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공분을 샀다. 이후 사실이 아닌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는 자성과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의 인격권을 위해 무분별한 취재를 자제하자는 움직임이 일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카메라가 내동댕이쳐졌고, 기자의 휴대전화가 바다에 내던져졌다. 그러나 부서지는 건 취재장비가 아니라 기자들의 마음과 자존심이었다.



탐승한 승객 중 구조된 승객이 배에서 내리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여객선침몰〉 구조되는 세월호 탑승자들」, 2014년 4월 16일자)

인격권 보호 뒤에 숨은 권력

세월호 침몰과 관련한 주요한 팩

트는 대부분 현장에서 취재됐다. 사고 초기 구조자들을 인터뷰해 얻은 팩트는 확인에 확인을 거쳐 ‘변침(방향선회), 고박장치 부실 등 사고원인’, ‘승객을 버려두고 탈출한 선장’, ‘혼자 남게 된 6살 여자아이의 사연’ 등 수많은 기사가 구조자들을 상대로 한 인터뷰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고 피해자들의 인격권이 침해되거나, 원하지 않은 모습과 목소리가 동의 없이 광범위하게 기사로 유통돼 혼란을 주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실종자들을 신속히 구조하는 것과 사고원인·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원칙은 무시되기 일쑤였다. 현장의 기자들은 인격권 보호와 취재 사이에서 방황하다 자의 반 타의 반 실종자 가족이 원하지 않는 취재나 보도는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 됐다. 그러자 이제는 범정부사고대책본부 등 정부 당국이 실종자 가족의 뒤에 숨었다. 공식 브리핑에서는 ‘최대 인원·장비 투입’이라는 판에 박힌 내용만 반복됐고, 그나마 새로운 사실을 취재할 수 있는 팽목항 실종자 가족 대상 브리핑은 “가족들이 원치 않는다”는 명분으로 기자들 접근을 막았다.

사고해역에서 잠수사가 제대로 투입되는지 살피는 취재진을 해경 경비정이 몰아내는 일도 다반사로 발생했다. 사실은 취재할 수 있었지만, 진실은 취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자 구조·수색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정부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만 파악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 가운데 온갖 음모론과 의혹이 수색을 더디게 했다. 일부 민간잠수사는 언딘과 해경이 잠수 참여를 막는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다이빙 벨은 구원의 종인 양 호들갑을 떨다 헤프닝만 남기고 사라졌다. 언론이 진실에 좀 더 접근하려 했다면, 실종자 가족의 인격권 보호를 명분으로 관계 당국이 언론을 피해 뒤에 숨지만 앓았다면 수색을 더디게 한 이러한 의심과 논란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장과 데스크의 괴리

시간이 지난 뒤 현장의 기자들이 가장 많이 제기한 불만의 대상은 비협조적인 대책본부 관계자나, 기자들에게 적대적인 실종자 가족도 아닌 자사의 데스크들이었다. 상당수의 기자가 이른바 ‘이야기되는 기사’를 물어오라고 지시하는 데스크들의 지시로 현장에서 원하지 않는 취재를, 실종자 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기사를, 음모론을 의혹으로 포장하는 방송을 만들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사상 최대 구조작전’이라는 제목으로 비난을 받은 연합뉴스의 기사의 경우 원래 제목은 ‘소조기 마지막 날 3, 4층 집중 수색...사망자 171명’이라는 팩트에 근거한 제목이었다. 현장에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데스크의 조그마한 팩트 비틀기가 진실과 떨어진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제목이 과장돼 나간 기사는 르포, 분석 기사 등 실제적 진실에 다가가려고 노력한 자사의 다른 기사까지 도매금으로 매도당하게 했다.

반면에 현장에서 데스크의 중요성을 절감하기도 한다. 필자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확인하라는 데스크 지시에 오보를 몇 차례 피하기도 했고, 여러 사진과 함께 섞여 송고된 희생자의 시신 사진이 데스크 과정에서 걸려져 실종자 가족 가슴에 생채기를 내는 일도 면할 수 있었다.

현장 기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데스크 급 기자들의 취재윤리와 재난보도준칙의 인식·적용이 대형재난사고 발생 시 반복되는 ‘언론불신’을 피하는데 무엇보다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언론사 간에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해야 할 취재’와 ‘쓰지 말아야 할 기사’의 선을 현장의 기자들에게 명확히 인식시켜주는 역할이 데스크에게 요구된다.

몸에 뺨 취재윤리

필자는 언론사 입사 시험을 준비하던 시절 재난보도준칙을 몇 차례 반복해 읽어본 적이 있다. 물론 언론사 입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단지 읽어 숙지한 준칙은 매우 급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일수록 몸에 배어 튀어나왔다. 또 다른 사건·사고 기사를 쓰며 독자나 당사자에게 인격권 침해로 항의받은 경험이 무의식적인 취재윤리를 몸에 배게 했다. 동의를 얻지 않으면 익명으로 하거나, 사진은 뒷모습이나 모자이크를 해 내보냈고, 기사가 당사자에게 끼칠 영향을 항상 의식하면서 기사를 썼다.

일각에서는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반복된 언론불신 상황을 피하기 위해 취재보도 준칙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진다. 그러나 신속성과 정확성을 둘 다 충족해야 하면서 취재원의 인격권까지 보호할 황금률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기자가 재난보도 현장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도 몸에 뺨 만큼 숙지하고 훈련하는 일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된다면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발생한 언론불신은 조금이나마 줄어들었을 것이다. 재난보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에 맞게 훈련과 실천을 하는 일도 절실하다.

외국의 재난 보도 기준 및 보도 사례



글. 유승관
동명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교수

1. 들어가며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중앙일보는 4월 22일자 1면을 통해 '세월호 선정적·부정확 보도 자제, 언론의 신뢰 원칙 지키겠습니다'라는 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탑승인원 전원 구조라는 희대의 오보로부터 시작해서 사고 초기 오락가락했던 정부 발표를 그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탑승자와 구조자 수, 구조작업 현황에 대한 오보, 숨진 피해자의 가족이 한 말을 구조된 학생으로 오인한 부정확한 보도, 에어포켓 등 과학적 합리성이 현저히 떨어



2012년 1월 13일 이탈리아 토스카나 질리오 섬 인근 해안에서 좌초된 코스타 콘코르디아(Costa Concordia)호
(출처 : DailyMail, 「Captain and first officer arrested as up to 70 cruise passengers missing and three dead as survivors tell of 'chaotic evacuation」, 2014년 1월 14일자)

**세월호 선정적·부정확 보도 자체
언론의 신뢰 원칙 지키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중앙일보는 확인된 사실만을 지면에 실고 실종자·사망자 가족들의 입장을 최대한 신중히 고려해 취재·보도하겠습니다. 언론의 최고 가치는 신뢰입니다. 선정적이거나 무리한 취재·보도로 취재원들에게 상처나 불신을 안겨선 안 된다는 보도 원칙을 준수할 것입니다. 조속한 실종자 구조를 거듭 기원합니다.

2014년 4월 22일 중앙일보 1면 기사

어지는 이론에 대한 무분별한 보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 등이 있었다. 또한, 부모의 생사가 확인 안 된 어린이의 얼굴 사진을 그대로 내보내는 등 기본적인 취재윤리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러한 우리나라 언론의 보도는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한국, 일본, 미국의 보도를 비교한 논문에서 한국 언론은 극심한 피해 부각, 사실적이기보다는 자극적이고 주관적인 언어 사용, 분석 탐사 보도보다 속보에 의존, 전문가보다는 정부 발표에만 의존¹⁾하는 미숙하고 비전문적인 보도가 높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주며 또 한번 공분의 대상이 되었다.

국가적인 재난과 재해와 관련하여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언론의 보도원칙과 태도에 대해 상당한 논의가 있어왔지만, 이 같은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에서 문제가 시작된다. 따라서 이

번 사고를 계기로 재난재해 관련 보도에 대한 언론의 취재원칙과 윤리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은 발생한 재난과 갈등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와 주의를 환기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다.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재난재해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한국 언론은 그동안 재난재해 사고를 보도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왔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치기보다는 책임자 처벌요구 보도에 중점을 두거나, 냉철한 문제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보도보다는 감정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로 치우치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 그리고 사태가 수습되고 나면 거의 보도를 하지 않고 사후대책의 실시 여부에 대한 확인 조차도 하지 않음으로써 관계 당국으로 하여금 시간만 흘러가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게 하는 데에도 일부 언론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로이터통신, AP통신, 그리고 미국의 저널리스트를 위한 국제센터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언론사의 재난보도 관련 가이드라인 검토를 통해 한국 언론이 추구해야 할 효율적이고도 바람직한 재난보도에 대한 준칙과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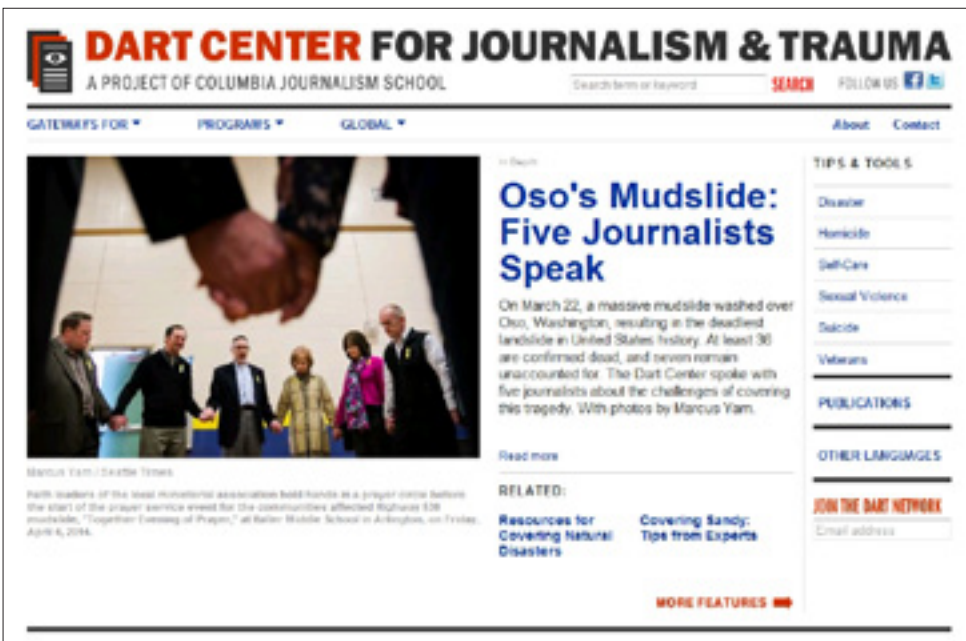
1) 백선기 · 이옥기 · 이경락(2012).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참사에 대한 국가별 보도태도의 비교연구: KBS, NHK, CNN 방송보도에 대한 내용분석과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7-68.

2. 해외언론사의 재난보도 가이드라인²⁾

1) 비극과 저널리스트-효율적인 취재를 위한 가이드(DART Center for journalism and trauma)

로이터통신은 자체 재난보도 매뉴얼은 없으나 재난재해보도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DART의 가이드 등을 원용하여 사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항상 희생자들을 기자 스스로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다루어지길 원하는지와 같이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라. 생존자들에게도 다가설 때와 물러설 때를 감각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해야 한다.
- ② 기사를 작성할 때 항상 정확해야 한다. 희생자와 희생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름과 사실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 ③ 피로 얼룩진 이미지와 같이 지나치게 과도한 표현이나 기사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상황에서는 스스로 이러한 사진이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또



DART Center for journalism and trauma 홈페이지(<http://dartcenter.org/>) 메인 화면 캡처

2) 이하 부분은 유승관·강경수(2011). 세계 뉴스통신사의 재난·재해 뉴스보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가을호, 140-169.의 일부분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임.

는 일반 독자나 수용자에게 불필요한 부작용을 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의 사용이 역사적인 기록을 위해서나 독자나 일반수용자를 위해 꼭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 ④ 일반 대중이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와 어느 정도의 취재가 과도한 것이 아닌지 부단히 기자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 ⑤ 재난현장에서의 어떠한 심한 반응에 대해서도 똑같이 거칠게 반응하면 안 된다. 정중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취재에 임해야 한다.
- ⑥ 비탄에 잠겨있는 사람의 감정을 침해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취재나 촬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희생자의 슬픔을 방해하거나 사적인 장소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 ⑦ 기자들이 신체적, 심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파견이나 취재 현장에 나가기 전에 사전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책임자나 데스크는 특히 젊고 경험이 부족한 기자나 사진기자를 위험한 현장에 파견할 때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2) AP통신의 재난보도 사례

AP통신의 경우 매뉴얼화된 재난보도준칙은 없으나 일반적인 보도준칙을 원용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① 재난 발생 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국에서 최대한 많은 인원을 재난 지역으로 파견한다. 단, 파견되는 기자들은 최소한 자신의 보호장비(약, 비상식량 등)를 챙겨서 출장길에 오른다. 각 지역 데스크는 각 지국의 인원 이동에 대해 항상 알고 있어야 한다.
- ② 재난 발생 지역에 도착하면 본사나 허브 지국에서 파견된 팀장과 매니저를 중심으로 재난 지역 파악에 나선다. 이때 기자들이 나가서 취재하고 본 것들은 기사화되면서 동시에 다음 취재를 위한 정보가 된다.
- ③ 재난 지역 출장이 예상되는 기자들은 미리 파상풍 등 예방조치를 한다(파상풍은 5년 유효).
- ④ 단독 행동을 하지 않으며 침수 지역이나 지역 경찰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지역은 출입을 삼가야 한다(분쟁지역에서는 지역 안전담당자의 허락이 있어야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가능).

- ⑤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을 임시로 고용하여 그 지역에 대해 모르는 기자들을 돕도록 한다.
- ⑥ 취재기자가 보내는 모든 기사나 영상은 현장 데스크가 허브 지국이나 본사와 직접 연락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이때 송출 장비는 가까운 지국에 있던 위성 송출장비나 인터넷 장비(재난 지역에서는 힘듦), 위성전화 등을 이용한다.
- ⑦ 보도준칙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익명을 요구하는 취재원을 기사화하려면 최소 3곳 이상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 ⑧ 재난 피해자들의 모습을 찍을 때는 상대의 허락을 얻도록 하며 취재원이 죄수들(실제 카트리나 취재 시 죄수들을 임시로 모아 놓은 버스정류장에서 촬영이 있었다)이라 할지라도 16세 이하의 얼굴을 찍지 못한다. 이때는 손, 발 등을 접사하도록 한다.
- ⑨ 만일 이미 송고한 기사나 영상에 오류가 있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수정을 하여야 한다. 실시간 수정을 할 때는 기사 중 잘못된 부분과 편집자 주(editor's note)에 그 부분이 수정되었음을 밝혀야 한다. 수정된 것은 반드시 정정(correction)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 ⑩ 이미 잘못 보내진 기사나 영상이 신문사나 방송사에서 사용되었다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그래프는 FIX 로고나 Bug를 붙여서 원래의 정보가 수정되었음을 알리고 사진은 새로운 캡션을 사용한 사진으로 대체한다. 비디오는 자막(script)이나 영상목록(shot list)을 수정하여 방송사에 다시 보낸다.
- ⑪ 인터뷰나 자료를 인용할 때는 반드시 인터뷰한 사람의 이름을 명시하고 자료는 출처를 밝힌다. 찬반이 있는 상황이라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균형 있게 담으려고 노력한다.

3. 재난재해 보도준칙

해외 뉴스통신사의 취재보도의 기본적인 방향을 살펴본 결과 로이터통신의 경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생존자 우선, 정확성, 과도한 표현, 진정한 보도 방향, 취재기자의 겸손, 희생자의 입장, 사전예방이나 안전교육을 중시하는 취재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AP통신의 경우도 취재기자의 사전 준비, 신속한 보도 준비, 취재원의 초상권 보호, 취재 시 오류의 신속한 정정 등을 기본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언론도 구체화된 재난보도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어 이를 사전교육하고 숙지하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전문성이 있는 재난보도전문 기자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비영리 공익단체인 ‘저널리스트를 위한 국제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Jour-

nalists: ICFJ)의 가이드라인 중 일부를 원용한 재난보도에 대한 보도준칙 제언이다.

취재단계

- ① 가능한 가장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 어떤 것이 밝혀졌고, 어떤 것이 또한 밝혀지지 않았는지를 말해 주어야 한다. 현장목격자의 말이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오보도 부정확한 정보는 즉시 수정해야 한다.
- ② 추측성 보도를 금해야 한다 : 모든 기사와 정보는 출처를 명기해야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여야 한다.
- ③ 복수의 소스를 사용해야 한다 : 경우에 따라 정부라는 단일 소스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나 업계관계자로부터 받은 정보가 더 신뢰성이 높을 수 있다.
- ④ 맥락을 제공해야 한다 :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지나친 단순화나 축약을 삼가야 한다.
- ⑤ 주의 깊은 질문을 만들어야 한다 : 잘 작성된 질문은 관계자의 답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⑥ 지도를 제공하라 : 시청자나 일반인이 재난의 양과 정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시각적인 정보는 효과적이다.
- ⑦ 모든 미디어를 활용하라 : 정보를 온라인에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것 이외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사후단계

- ① 관련 서류 및 기록 등을 조사해야 한다 : 재난이나 사고의 초기 몇 시간 동안은 업데이트된 뉴스가 중요할 수 있으나 그 이후 단계에서는 재난의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난에 대한 공문서나 기록을 찾아야 한다.
- ② 전문가와 협의하라 : 건물 붕괴의 경우 건설건축 전문가와 교육문제의 경우 학생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등에 대한 전문가의 활용은 유용하다.
- ③ 스토리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추적해야 한다 : 피해 정도나 물적 손해 등 사고의 진전에 따른 변화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 ④ 재난방지 대책과 예방 등에 대해 정밀보도를 해야 한다 : 정부나 지자체는 재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해왔는지, 유사한 과거의 재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정밀한 조사를 해야 한다.
- ⑤ 재난의 패턴을 조사하라 : 재난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정밀히 조사한다. 이러한 과정



‘저널리스트를 위한 국제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Journalists: ICFJ) 홈페이지(<http://www.icfj.org/>) 메인 화면 캡처

을 통해 어떤 시설이나 부분은 더 많이 또는 상대적으로 적게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비교 분석과 제시가 가능하다.

- ⑥ 향후 예방과 미래의 준비사항에 대해 보도하라 : 유사한 재난발생 시 대피방법과 예방법, 비상전화번호 등에 대해 안내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해외언론사의 재난재해에 대한 보도준칙의 기본 방향은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최소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를 토대로 재난보도준칙의 기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언론사는 재난보도 취재에 대한 매뉴얼을 평상시 준비하고 이에 근거하여 취재 및 보도를 해야 한다.
- ② 재난뉴스 취재기자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 ③ 인명 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취재행위나 인터뷰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
- ④ 사상자나 생존자들, 가족들에 관한 가십성 기사는 사고의 본질을 흐릴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
- ⑤ 재난보도 현장의 사정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서는 데스크의 기사 내용에 대한 가

감이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

- ⑥ 현장에서 취재된 기사를 데스크에서 작성할 때 현장기자의 증언이나 의견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
- ⑦ 사고 원인 등과 같은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재난대책 공식기구의 책임자나 대변인을 통해야 한다.
- ⑧ 재난뉴스를 취재하는 기자는 재난사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 ⑨ 사고 상황이나 목격담을 듣기 위한 목적이라도 부상당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인터뷰해서는 안 된다.
- ⑩ 재난 현장 취재 시 현장 통제관의 요구나 지시를 어기는 취재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 ⑪ 자극적이고 비참한 사고현장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 ⑫ 대형 재난일 경우 양질의 정보제공을 위해 취재된 기사를 선별할 수 있는 현장 데스크를 설치해야 한다.
- ⑬ 언론사 내에는 재난보도를 전담하는 전문팀이 상설화되어 있어야 한다.
- ⑭ 희생자나 부상자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은 초상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⑮ 뉴스통신사나 언론사 간의 과열 경쟁보도를 지양하기 위해 사고현장에 합동 취재 풀(pool)제도가 필요하다.

재난재해 취재보도의 실무지침에 대해서 로이터통신과 AP통신은 기본적인 재난보도의 실무지침을 사전에 교육하여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소한의 보호 장비, 예방조치, 안전수칙, 송출장비, 인터뷰 요령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실무지침은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재난보도가 특정 기자의 몫만이 아닌, 인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우선시하여 현장에 가까운 취재기자가 최초보도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전체 기자에 대한 재난보도 교육이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평소 재난보도에 대한 뉴스통신사나 언론사 자체의 의지와 노력이 있을 때 신속한 보도가 이루어지고 인명을 구조하고 안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취재의 신속성과 속보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상시적인 취재보도 교육을 통해 재난재해보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맺는말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서 사람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 미디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디어의 역할은 강조된다. 특히 재난방송에 있어서 보도는 사실성, 접근성, 흥미성과 같은 기존의 저널리즘적 뉴스가치 판단과 보도기준과는 달리 전문성, 정확성, 그리고 계몽성과 예방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재난재해 보도는 사실과 의견을 분리하지 않는 보도양식이나 상업적이고 선정적인 보도태도를 자제하고, 취재경쟁으로 인해 구조에 방해받지 않는 취재체계의 확립과 보도의 객관성, 일관성, 정확성을 유지하고, 참혹한 현장의 모습보다는 재난구조 내용을 우선적으로 보도하여 객관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재난재해와 관련된 보도는 사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내용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정보전달자의 역할과 동시에 방재기능 등의 사회적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향후 재난 관련 보도에 있어서 재삼 강조해야 할 덕목으로는 사고현장, 피해규모, 생존자, 구조 및 의료상황, 정부나 관계기관의 대책에 대한 철저한 사실 중심의 취재보도와 정밀보도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단편적 에피소드 중심 보도 보다는 맥락을 효과적으로 해설하는 해석적 보도와 재난 원인에 대한 추적과 재난 이후에도 이에 대한 검증과 평가에 대한 심층보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고 총체적인 사회감시와 비판이란 독보적이고 숭고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충분한 확인을 거치지 않고 정부 발표에만 의존해서 기사를 작성하는 정부 발표 의존형 받아쓰기와 팩(pack) 저널리즘, 그리고 속보 경쟁으로 인한 오보의 피해는 언론의 고질적인 관행이자 언론 수용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한다. 이와 같은 언론의 병폐는 부메랑이 되어 언론 자체의 신뢰를 갉아먹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나 아픔을 위로하거나 최소화시키기보다는 언론 스스로 더욱 감정적이 되어 극적이고 주관적인 보도를 일삼고 축소 및 과장된 보도를 하고, 추측성 보도와 흥미만을 자극하는 선정적 보도 경향은 인간을 배려하지 않는 선동적이고 몰염치한 작태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오죽하면 세월호 침몰의 피해 가족들이 한국 언론과의 접촉을 거부하고 외신과만 인터뷰하려고 했을까? 이제는 재난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세월호 선내방송 같은 한국 언론³⁾이란 비판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이 글에서는 재난재해 관련 보도준칙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었으나 대부분

3) 노정태, 세월호 '선내방송' 같은 한국 언론, 경향신문 2014.5.15, 29면.

은 일반적인 저널리즘 원칙에 기반한 것으로 이러한 원칙이 준수된다면 많은 병폐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한 그간의 관행을 버리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자 스스로 취재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언론사도 취재원칙과 윤리강령에 대해 강조하고 재교육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뿐만 아니라 제반 사회 시스템의 총체적 변화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언론의 중차대한 덕목이 환경감시이고, 이러한 환경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언론 자체의 혁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의 변화가 사회개혁을 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를, 무엇을 위한 알 권리인가



글.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

“우리 그동안 독자들에게만 신경을 써왔던 것 같아. 아웃풋(Output, 산출물)이 아닌 소스(source, 출처)에 관해선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닌지...”

얼마 전 한 선배 기자가 세월호 침몰 관련 뉴스를 보다 문득 물을 하나를 던졌다. 나에게 던진 질문이라기보다는 독백에 가까웠다.

그에게 왜 그런 의문이 스쳤을까. 아웃풋과 소스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내가 그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흔쾌하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다.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되짚어 보려고 한다.

세월호 얘기부터 꺼낼 수밖에 없다. 세월호는 한국 사회, 한국 정치 뿐 아니라 한국 언론의 민낯까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학생) 전원 구조’(4월 16일) 사고 당일 뉴스 속보만 믿었던 부모들은 아이들이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잠수 512명, 헬기 29대, 함정 171척’(4월 17일) 부모들은 잠수요원이 10

여 명에 불과했던 당시, 구조 상황을 한껏 부풀린 보도에 “언론이 정부 입장만 받아쓰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내가 팽목항에서 만난 젊은 기자들은 “취재를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기자 수첩을 꺼내면 “당장 나가라”는 가족들의 고성어 터져 나왔다. 카메라를 향해 물병이 날아오기도 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외신 기자들이 실종 학생 부모들을 인터뷰할 때 그 뒤쪽에 국내 기자들이 옹기종기 서서 수첩에 대화 내용을 적고 있는 장면이었다. 얼마나 언론을 불신했으면... 가슴이 답답해졌다.

단원고 고3 학생이 쓴 ‘대한민국의 직업병 걸린 기자분들께’에서도 언론에 대한 분노는 확인됐다. 기자가 장래희망이었다는 그는 자신이 꿈을 접은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양심과 신념을 뒤로 한 채 가만있어도 죽을 만큼 힘든 유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분들, 애타게 기다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큰 실

망과 분노를 안겨줬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아니 기자들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인가. 과연 몇몇 기자, 몇몇 언론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 이런 불신이 계속된다면 기자들의 내일은 없는 것 아닌가.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 있던 진도 실내체육관과 팽목항이 한국 사회를 압축한 것이라면 기자들이 설 곳은 과연 어디인가. 내가 기자라는 직업인으로서 갖게 된 위기감은 그러한 것들이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기자들 스스로에게 있었다. 한마디로 소스, 즉 기사를 작성하는 공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다. 기사야 어떻게 만들어지든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자세였다. 특종을 하는 것이, 좋은 기사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모든 것은 ‘국민의 알 권리’라는 만능키로 해결됐다. 국민이 그 기사를 왜 알아야 하는지, 그 기사가 어떻게 생산됐는지에 관한 고민은 생략됐다.

그 결과 취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소외되고 말았다. 기자들이 세월호 희생자·실종자 가족들의 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질문을 던지거나 촬영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가족들의 비통함조차 ‘기삿거리’였을 뿐이다. 물론 그 슬픔을 온 국민이 공유하도록 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대로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할 것은 당사자인 가족들의 마음이었다.

세월호 참사 후 한국기자협회에서 발표한 ‘세월호 참사 보도 가이드라인’을 보자. “세월호 참사 보도는 신속함에 앞서 무엇보다 정확해야 한

다. 주요 현장에서 취재와 인터뷰는 신중해야 하며,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 보도한다. 언론은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노력한다...” 어쩌면 당연한 원칙인데도 기자들은 망각했거나 무시했다.

소스의 위기는 실종자 가족 보도에 그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방송사를 중심으로 보도의 독립성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따라 기사를 생산하고 내보내는 과정에 어떠한 이물질이 끼어드는지 국민들은 주목했다. 기사가 순수한 취재의 결과물이 아니라 언론사 외부의 입김이나 언론사 자신의 이윤 논리, 정치적 편향 등에 의해 왜곡될 수 있음을 국민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한 것이다.

“언론사도 돈을 벌어야 하는 기업이다”,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불가피한 측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줄여나가려는 노력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건 용서받기 힘들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지만, 입이 삐뚤어지면 삐뚤어진 말 밖에 나오지 않는다. 나아가 상당수 국민들은 기자들이 지금까지 믿고 기대온 기존 소스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길을 던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초기에 제기된 오보 논란은 ‘정부 발표는 그냥 믿고 써도 된다’는 기자들의 믿음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정부 발표도 따져보고 확인해봐야 한다. 정부 발표대로 썼다고 해서 기사 작성·보도

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피동형 기사도 소스의 문제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인 것으로 판단된다’ ‘~로 풀이된다’ ‘~로 관측된다’ ‘~라고 전해졌다’ 같은 피동형 표현은 무분별한 익명 사용과 함께 객관 보도의 의무를 저버리는 통로가 되기 일쑤다. 김지영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위원이 쓴 책 〈피동형 기사들〉은 이렇게 지적한다.

“피동문 기사에서는 글을 쓴 행동주체인 기자가 잠적한다. 자연히 글의 책임성이 부족해지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한국 언론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선 소스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내가 “소스가 문제”라는 선배 기자의 말에 완전히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웃풋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소스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기사는 아웃풋에 그 흠결이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소스를 지나치게 믿는 데 따른 오보도 그러하지만 이른바 ‘야마주의’의 폐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야마주의’란 특정 언론사의 취향에 맞는 주제에 따라 팩트를 변형시키는 것을 말한다. 언론 자신이 야마주의에 빠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다행이다. 자신이 야마주의에 포획돼 있음을 알지 못할 경우 더 큰 폐해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1월 인권보도준칙 준수 실태와 관련된 토론회에 참석했을 때다. 윤여진 언론인권센

터 사무처장이 나주 성폭행 사건을 예로 들면서 “언론은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 기자들이 자기 기사로 당사자에게 얼마나 피해를 줄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사무처장은 자신의 말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했다.

“기사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대체 자신이 뭘 잘못했느냐는 거죠. 기자들, 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순간 옆자리에 앉아 있던 내 얼굴은 붉어졌다. 알 권리를 내세워 갑(甲) 행세를 하던 기자들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나 역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갑질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20여 년 전의 일이 떠오른다. 당시 나는 기자 직업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진 적이 있었다. 취업 준비를 하던 졸업생이 술을 마신 뒤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다. 당시 경찰 출입 기자였던 나는 경찰에서 만든 자료와 경찰관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다. 취업 실패를 비판해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였다. 이 기사에 대해 가족들은 “취업 실패를 비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반발했다. 사실 그가 유서를 쓴 것도 아니어서 정확한 원인은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당시 사회 문제로 떠올랐던 취업난에 맞춰 기사를 썼던 것이다. 그래야 기사가 먹히니까. 내

적인 고민에 시달렸지만 결국 가족들을 찾아가 사과하지도, 기사를 바로잡지도 못했다. 선배·동료 기자들은 “오보로 확인된 기사는 아니지 않느냐”고 위로했다. 나는 그들에게 “기자 그만두고 싶다”고 우는소리를 하다가 다시 익숙한 생활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양심을 가진 기자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한편으론 세상에 대해선 갑질을 해온 것이 어찌면 나의 실제였는지 모른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취재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보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취재원에 대한 진지함 없이는 국민의 알 권리, 독자의 알 권리도 보장할 수 없다. 심하게 말하면 ‘알 권리’가 아니라 ‘기자의 보도를 알 권리’ ‘잘못 알 권리’로 전락하게 된다. 국민을 위하고 독자를 위한다면서 정작 기자 자신의 인일함, 언론사의 영향력만 위하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

세월호 보도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 언론에 대

한 ‘옐로우카드’다. 이제까지 중력과 같은 관성에 젖어 살던 기자들에게 ‘계속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U턴 표지판이다. 만일 기자들이 세월호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이른바 제도권 언론들은 쇠락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지금이라도 무엇이 진정한 알 권리이고, 어떤 것이 진정한 언론의 사명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오늘도 많은 기자들이 현장에서 팩트를 찾고 확인하기 위해 발로 뛰어다니고, 굵은 땀을 흘리고, 긴 밤을 지키고 있다. 나는 그들의 발과 땀과 밤이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선 매 순간 인간의 가슴을 잃지 않으려는 분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한국 언론의 시스템을 진화시켜야 한다. 바로 그것이 세월호 객실에서 ‘기다리라’는 말에 간혀 숨져간 아이들을 추모하는 방식일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기자의 취재 현장 방문 주거침입인가 아니면 정당한 취재활동인가?



글 김재협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

I. 들어가면서

기자는 취재를 위하여 보도와 관련된 현장이나 취재원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현장 등을 방문하는 일이 잦아질 수밖에 없다. 관련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현장 등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동의가 미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취재라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통상 관련 당사자에게는 사전 동의는 물론 사전 통보도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항상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다.

최근 MBC 보도국장인 2013. 7. 취재차 보도국장실을 찾은 미디어오늘 기자를 무단침입 등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2014. 1. 무단침입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



고, 퇴거불응으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하였고, 기자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해 현재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퇴거불응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¹⁾ 형식적으로 형법상 퇴거불응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

1) 취재 현장을 찾은 기자가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문화방송이 조 기자를 고소했을 때 언론단체들은 취재를 거부할 순 있으나 취재를 위해 방문한 기자를 무단 침입과 업무 방해로 고소한 것은 언론사가 법을 악용해 언론 자유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도 소속과 이름, 취재 목적 등을 밝히고 찾아간 것이어서²⁾ 취재를 위해 접근할 권리로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채널A의 '먹거리X파일' 프로그램 캡처(출처: 채널A 「이영돈 PD의 먹거리X파일 115화」, 2014년 4월 18일)

위 사건에서 언급된 유형 외에도 기자의 취재 현장 방문은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기도 한다. 가장 흔한 경우가 상업적

목적을 위해 개방된 음식점이나 백화점 등을 방문해 해당 시설이나 상품, 서비스 등의 문제점을 취재하기 위한 것, 환경오염의 원인 물질 배출로 의심되는 사기업체의 공장 등에 접근하고 방문하는 일, 국세나 지방세 등 고액세금 체납자의 회사나 개인 주거 등의 취재를 위해 방문하는 일 등이다. 또한 근자에는 연예인 전문 파파라치에 해당하는 디스패치 등 언론매체의 등장으로 연예인이 활동하고 생활하는 드라마 촬영 장소, 외부 활동 장소는 물론 사적 공간인 주거지 등에 대한 몰래 접근하는 취재도 일상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 글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취재 장소나 대상 인물에 대한 기자의 모든 접근 방법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 취재 대상자의 주거나 사무실 등 휴식이나 업무 공간에 접근한 경우를 한정하여 형사상 주거침입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형식적으로 주거침입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면책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지, 그 면책의 요건은 어떠한지 등의 법적 문제를 되짚어 보고, 아울러 그밖에 정당한 취재 방문으로 인정되는 요건과 범위 등에 관하여도 살펴보려고 한다.³⁾

II. 취재의 자유와 그 한계

언론보도의 자유는 보도할 자료를 수집하는 취재의 자유를 전제로 하여야만 의미가 있기 때문

2) MBC 관계자는 “조 기자가 MBC 출입기자로 정식 등록된 적이 없고, 출입기자는 MBC 홍보부에 ‘출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홍보부로부터 ‘상시출입증’을 받아야 출입이 가능하고, 상시출입증은 6개월 단위로 갱신된다”면서, 조 기자가 출입신청서 제출 사실이 없으며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는 “허락도 받지 않고 노조 사무실 뒷문을 통해서 몰래 보도국장실에 들어가 다짜고짜 물어볼 게 있다며 행패를 부렸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 측은 “조 기자는 MBC 출입기자에 등록된 기자”라며 “MBC에 출입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3) 다만 새로운 이론이나 관점을 부각시킬 것은 없는 쟁점이나, 지금까지 학계와 실무계에서 논의되어 온 관점을 위 문제에 한정하여 정리해 보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에 보도의 자유는 취재의 자유를 당연히 포함한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이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3항). 그러나 취재의 자유는 언론의 취재활동을 방해하는 국가기관의 간섭을 배제할 권리로 소극적인 방어권이고,⁴⁾ 국가에 대한 권리로 사인에 대하여 바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기자가 취재의 자유를 발미로 임의로 사적 시설에 출입하거나 사인을 취재할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⁵⁾ 또한, 기자에게 취재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에서도 일반 국민에게 허용되는 이상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⁶⁾ 시간, 장소, 방법 등에 관한 사전제한도 허용되는 제한적 권리이다.⁷⁾

또한, 취재의 자유는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권력기관이나 이해관계인 등이 이를 방해하고 간섭하지 말아야 하고, 언론사가 그러한 방해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이지, 나아가 정보공개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이나 사인이 적극적으로 취재기자의 취재행위에 능동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III. 취재를 위한 출입 및 접근이 허용되는 장소 등

1. 공개된 장소나 재난, 사고 장소 등

거리, 공원, 공항, 역, 터미널, 기타 공개된 장소로서 출입이 자유로운 장소는 교통이나 공공질서의 위배나 방해가 없는 한 기자의 취재를 위한 접근이 자유롭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그 경우에도 공원, 공항, 역 시설과 이용자의 안전과 평화에 관련된 관리자의 관리 행위에 의하여 제한된다.⁸⁾ 관리자의 제한 기준 설정은 내용 중립적인 시간, 장소, 방법에 의한 제한에 관하여 관리자의 결정이 도출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효율적인 사법적

4) 취재의 자유에 대한 법적 성격의 고찰로 자유권적 기본권이 아닌 매스커뮤니케이션의 기능보장이라는 헌법적 명령에서 도출되는 하나의 객관적 가치 질서로 보아, 사회공동체 전체가 그 권리의 주체이고 언론 현업에 종사하는 기자를 사회공동체의 수탁관리자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이 글에서는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고민수, 취재의 자유와 알권리에 관한 고찰, 미국법연구 18권 2호, 2007, 401-416쪽 참조.

5) 다만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일반에 공개된 집회에서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회견을 표기한 완장을 착용한 기자에게는 출입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 단서).

6)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 참조. 미국 연방대법원의 *Pell v. Procunier*, 417 U.S. 817 (1974) 판결이 밝힌 것도 마찬가지다.

7) 법정에서의 사진촬영·녹화·중계방송 등은 범인의 허가 없이는 행할 수 없고(법원조직법 제59조),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의 비밀에 관한 감청이나 통신자료 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없으며(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5조, 제6조 등), 군사기밀도 탐지·수집할 수 없다(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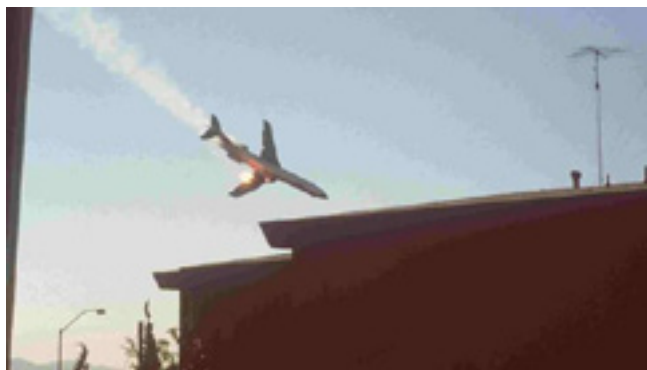
8) *Hefron v. ISKCON*, 452 U.S. 640, 647-50 (1981), and *id.* at 656; *Clark v. Community for Creative Non-Violence*, 468 U.S. 288 (1984) (심야 캠핑 장소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원에서 잠자면서 하는 시위는 금지된다. 취재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인 심사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⁹⁾ 이는 취재의 자유에 관한 제한 기준 설정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그런데 재난 현장, 육상이나 해상 사고, 항공기 사고나 범죄의 현장 등의 접근은 공공의 장소에 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다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즉 재난 현장은 경찰관, 소방관, 기타 구호 담당자 등이 비상 구조 활동이나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접근자에게 상당한 위험이 수반된다는 이유로 기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고, 범죄 현장에서는 경찰관 등이 증거의 보전과 훼손이나 유실의 방지, 수사에 관한 단서 확보 등 경찰수사에 장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목적, 특별한 경우 개인의 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도 기자의 접근도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경찰은 범죄와 사고 현장 접근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 기준과 명확한 내용을 설정하여야 하고,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한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고 현장에 대한 취재 기자의 접근과 촬영 금지 등에 관련된 판결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는 경찰 등이 사실상 사고나 범죄 현장 등에 대한 일정 범위 내의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 기자가 그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고 있어 그러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뿐이지, 경찰관의 가이드라인에 관하여 기자의 불만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의 판례로 *Leiserson v. City of San Diego* (1986) 사건 판결이 판시한 바가 참고될 만하다[184 Cal. App. 3d 41 (1986)]. 이 사건은 1978. 9. 25. 샌디에이고 중심부의 주거 구역에 제트 여객기항공기 추락으로 약 150명이 사망한 사고 현장에서, 텔레비전 방송국 카메라 기자가 30여 분간 비디오 촬영을 하였다. 경찰이 추락지점에서 60피트에 출입차단선을 설치하고, 그 기자에게 그 밖으로 퇴거를 명하였다. 하지만 기자가 불응하자 현장에서 체포한 조치는 경찰이 비행기 추락사고 현장에 대한 수사 진행과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것이어서 불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1978년 9월 25일, 샌디에이고에 추락하고 있는 제트 여객기항공기 모습 (출처 : U-T San diego, 「Crash of PSA Flight 182 vivid 35 years later」, 2013년 9월 25일자)

9) 1196 *Thomas v. Chicago Park Dist.*, 534 U.S. 316, 323 (2002).

나아가 취재 접근이 자유로운 공개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그 장소에서 특정인을 인터뷰하고자 하는 경우, 접근의 자유 여부는 그 대상이 공인인지, 사인인지 등에 따라 판연히 달라지고, 초상권, 사생활이나 프라이버시 보호 등에 관한 일반적 준수 원칙이 그대로 준수됨을 유념하여야 한다.¹⁰⁾ 그리하여 공적 장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접근이나 촬영 등이 지나칠 경우에는 위법하므로, 기자로 하여금 일정 거리 이내의 접근 금지조치를 명할 수도 있다.¹¹⁾

2. 공용청사 등 공적 시설

개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등 공용건물에는 기자의 취재를 위한 출입이 자유로이 허용됨은 당연하다. 그러나 공공 청사라 하더라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각종 외청, 대사관, 공공박물관이나 역사관, 정부문서 기록관리소, 연구소, 공적 도서관, 복지 시설, 경찰서, 검찰청, 법원, 교도소, 구치소 등 그 담당 업무의 내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구별되는바, 그에 따라 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이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개인의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시설이나 업무 관리권자가 정하여 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간, 장소 등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기자도 그에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법정의 출입은 헌법상 재판공개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취재를 위한 기자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된다.¹²⁾ 이에 따라 관행상 좌석 수가 제한된 법정에서도 기자를 우선 배려하여 일부 자리를 배정한다. 법원홍보업무에 관한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법원 내 기자들을 위한 기자실을 마련하여 출입기자의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판결문 등의 자료도 열람하게 하는 등 언론기관의 취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법원의 보안, 업무집행 또는 재판당사자의 인권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취재활동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내규 제10조, 제11조, 제12조). 한편 현재 출입기자가 법원 판사실 또는 사무과 직원 근무실에 입

10) 따라서, 공적 장소에서의 취재라고 하더라도 집요한 감시, 미행, 공격적 인터뷰, 워킹 카메라설치 등으로 무차별적인 취재를 하는 경우는 혼자 있고 싶은 권리(right to be let alone), 대중의 눈으로부터 개인적 특성이나 활동을 감추고 싶은 프라이버시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게 될 여지가 많다. 구체적인 취재 행태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나, 피해자의 개인 집 앞에서 상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가족이나 드나드는 사람을 상시 감시하고 몰래 취재하는 행위, 피해자가 언론을 피하려는 적극적인 행위를 보이는데도 끈질기게 미행하여 지나치게 근접한 거리에서 몰래 촬영하는 행위 등은 사생활의 평온성을 해친 것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

11) *Galella v. Onassis*,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 13 Sept. 1973. 유명 인사나 공적 인물을 주로 촬영하는 전문 프리랜서 사진 작가인 Galella가 재클린 케네디 오나시스(전직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미망인)와 그녀의 아이를 촬영하면서, 그녀의 아들이 타고가는 자전거의 앞에 뛰어 들거나 모터보트에 위험할 정도로 근접하는 행동을 한 데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오나시스에게 25피트, 아이들에게 30피트 이내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12) 비공개로 진행되는 재판은 관계 당사자 외에는 그 재판 내용에 대해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 특히 영장실질심사 재판에서 기자들이 출입문 틈새로 귀를 통해 재판진행 내용을 들으려 하는 등의 행위도 위법함을 유념하여야 한다.

의적으로 수시 출입을 하고 있으나, 일반 민원인에게 출입이 개방된 장소 이외의 공간에 대한 취재 출입은 법원의 시설 관리권에 따라야 하고, 취재대상이 판사이거나 일반직원인 경우 반드시 사전에 허락이나 동의를 받아 출입하고 만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다른 청사 등에 취재를 위한 출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IV. 취재를 위한 출입 및 접근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장소 등

1. 사유 재산 등 사적 공간

주택이나 아파트 주거, 호텔 등의 개인 휴식 공간, 사무실 등 개인 업무 공간 등은 관계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는 기자의 출입이 금지된다. 개인의 사적 공간(private places)의 보호는 헌법상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에 관한 규정(제17조), 형법상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형법 제 316조, 제317조) 등을 들지 않더라도 사유재산권 이상의 보호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¹³⁾

사적 공간에 대한 기자의 출입과 취재 행위는 관계자의 동의를 받고 그 동의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허용되나, 그 경우에도 기자의 신분 위장 등에 의한 취재는 피해자의 동의를 무의미하게 할 수 있어 용인되지 않는다.¹⁴⁾ 사적 공간의 부당한 침범취재가 위법하다는 판례로는 방송국 기자가 압수수색을 하는 경찰을 따라 과외교습 현장인 연습실에 들어가 기자라는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촬영과 인터뷰를 하여 보도한 것은 배타적 사용공간인 연습실에서의 사생활과 초상권침해로 위법하다고 한 판결,¹⁵⁾ 종교단체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는 프로그램 제작·방영하기 위하여 그 단체의 사적 공간에 침입한 것도 은밀한 사적 영역의 침해로 위법하다고 한 판결¹⁶⁾ 등을 들 수 있다.

13) In *Garner v. Louisiana*, 368 U.S. 157, 185, 201-07 (1961); *Wilkins v. National Broadcasting Co.* (1999) 71 Cal. App. 4th 1066 [84 Cal. Rptr. 2d 329].

14) 과거에는 이러한 신분 위장 등을 통하여 불법 취재하여 특종을 올린 사례도 많았으나 {모 국회의원의 상시대 재단 비리 사건에 관하여 모 기자가 대검찰청 수사관으로 신분 위장하여 관련자를 압박한 사건, 1993년 상문고 비리 사건에 관하여 기자가 검찰청 직원으로 위장하고 서무담당자의 집에 들어가 관련 서류들을 몽땅 챙겨 나온 사건, 1998년 모 기자가 서울 강남 고액과외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서울지검 모 부장검사의 딸이 고액과외자 명단에 들어있다는 정보(후에 잘못된 정보로 밝혀짐)를 확인하기 위해 부장검사의 집에 전화를 걸면서 경찰이라고 신분을 위장한 사건, 대구대 비리사건을 취재하던 모 기자가 수사검사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에 보관된 참고인 진술조서를 몰래 프린트한 사건} 지금도 가끔 행하여지고 있다고 한다.

15) 서울고등법원 2001. 1. 11. 선고 99나66474 판결. 개인의 사적 공간에서의 취재는 비록 현행법으로 체포되고 있는 때라고 하더라도 체포와 관련하여 적법절차를 갖춘 사람 외에는 관계자의 동의 없이 출입이 금지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 위법한 취재행위로 얻어진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취재행위의 위법과는 별개로 공공성, 진실성 또는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16) 서울고등법원 2003. 3. 20. 선고 2002나23408 판결.

한편 최첨단 전자 장비의 비약적인 기술의 발달로 사적 공간에의 물리적 침입 없이 고성능 도청장치나 카메라 등으로 도청, 도촬하는 하이테크 기술에 의한 침해 행위¹⁷⁾¹⁸⁾도 위법함은 물론이다.¹⁹⁾ 언론중재법은 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5조 제2항), 승낙은 명시적이 아니어도 묵시적이거나 추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강압 등의 방법으로 강제적으로 승낙을 받은 것은 적법하지 않다. 승낙의 위법성조각은 승낙의 범위 내에만 미치고 이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 예상한 것과 다른 목적, 방법, 범위 등으로 침해된 경우에는 위법하다.

2. 준 공적 시설이나 장소

극장, 식당, 백화점, 상점 등 개인 재산이지만 일정한 목적하에 일반 공중에게 자유로운 출입이 개방된 공간을 준 공적 시설이나 장소(quasi-public places, semi-public places)라고 하는데, 이 공간은 개인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개방과 이용 목적상 공중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고 초대된 것이어서, 취재를 위한 기자의 출입도 공공의 장소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자유롭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소유자나 관리자의 개방 시간이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해 둔 원칙 등 관리 방침에 따라야 한다. 관리인이 기자에게 그에 위반된다고 하여 퇴거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응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거 불응, 영업 방해에 해당한다.²⁰⁾

V. 위법한 취재방법과 그로 인하여 취득한 정보 보도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유 등

1. 취재 행위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일반적 원칙

언론중재법은 인격권의 침해에 관한 위법성 조각사유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동의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를 명시하고 있다. 위법한 취재방법에 의한 정보의 수집 또는 조달은 취재 자유의 범위 내에 들지 않으므로 보호될 수 없다. 특히 그 방법이 형법 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17) 몰래카메라의 사용이 초래하는 인격권의 침해와 취재의 자유 간에 상충되는 법익균형성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로는 김경호,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취재와 인격권의 침해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2003. 47권 3호, 4호 참조.

18) 스웨덴 의회가 2014. 5.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어야 하는 개인의 사적 공간을 관리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 촬영한 행위를 2년 이하의 지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고, 2014. 7. 1.부터 발효된다고 한다. Techhive 인터넷 신문 2014. 5. 31.자 기사(Mikael Ricknas, IDG News Service).

19) 이와 같은 불법 취재행위에 관한 자세한 고찰은 박용상, 명예훼손법, 2008. 헌암사 756-790쪽; 박용상, 언론의 자유, 2013. 박영사, 258-268쪽; 김재협, 위법적 취재 관행과 법적 환경, 언론중재 1999 여름호, 62-79쪽 참조.

20) Marsh v. Alabama, 326 U.S. 501 (1946); Frisby v. Schultz, 487 U.S. 474 (1988).

경우 당연히 일반적인 법원리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 취재의 위법성 판단 요소로는 취재와 보도의 목적과 내용, 취재대상자의 사회적 지위와 성격, 연령, 성별, 피해법익과 침해형태, 전후 사정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한다. 취재행위가 취재·보도 목적의 정당성(보도대상의 공공성, 보도목적의 공익성, 보도내용의 진실성), 취재 수단·방법의 상당성과 보충성, 취재행위로 인한 침해법익과 보호법익의 균형성 등이 갖추어지면 형법 제 20조에 의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로 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다.

2. 구체적인 판례

가. 서울고등법원 2005. 8. 16. 선고 2005나10977 판결

방송의 제작진이 고의로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 없이 주거, 공장 등에서의 촬영과 인터뷰 강요한 행위에 관하여 사적 생활관계를 탐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방세 체납에 대한 고의성을 판단하고자 주거관계 및 회사의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거주 주택, 이용 승용차, 운영 공장,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한 취재활동으로서 그 정도의 사생활 영역에 대한 취재 및 촬영이 필요하고도 부득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의 사생활이 일부 노출되거나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방송의 공익성, 그 취재·촬영의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등을 참작할 때 수인하여야 할 범위 내에 속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30. 선고 2002가단368619 판결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이사장이 그 직원과 여관에 들어가 장시간 있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촬영하고 취재한 행위에 관하여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운영에서의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등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활동의 성질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취재 내용은 동시에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되어 이사장으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당시 상황에서 그와 같은 촬영 외에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취득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뚜렷이 없었으며, 촬영된 비디오 테이프 역시 실제로 이러한 목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손해배상의 법적 책임이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연예인에 대한 사진 무단 촬영 보도와 관련하여 동의 없이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양가 상견례, 데이트 장면 등을 상세히 묘사하고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을 함께 실는 보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고, 동의 없이 여자 연예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그 사진을 게재하여 보도함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세부적인 사생활 장면이 나타나는 사진을 제외한 부분의 보도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 연예인의 사생활 영역에 관한 사항을 상당한 방법으로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다.

이 판결이 밝힌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에 관한 일반적 법리의 설명이 다소 의미 있어 소개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라.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639 판결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이 취재와 보도를 병자하여 고소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취재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인터뷰 협조요청서와 서면질의 내용을 그 자리에 두고 나왔을 뿐 폭언을 하거나 보도하지 않는 데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은 점, 관

할 세무서가 피고인의 제보에 따라 탈세 여부를 조사한 후 증여세를 추징하였다고 피고인에게 통지한 점, 고소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 기자로서 보도에 앞서 정확한 사실 확인과 보도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취재 요청이 필요했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행위가 설령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문기자의 일상적 업무 범위에 속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범죄피해자 관련 보도 유감



글 이은경
변호사, 법무법인 산지
서울지5중재부 중재위원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대대적인 언론보도가 있었고, 국민들의 공분이 들끓는 가운데 이에 관한 근본적 성찰과 제도적 보완책이 논의되었다. 언론이 사회의 방향성을 주도한 사례 중 하나이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한 가지 유감이 있다. 바로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기치로 내걸면서도 피해자 인격배려가 소홀하다는 점이다.

새엄마에게 맞아 죽은 여덟 살 아이에 대한 친엄마의 처절한 심정은 도외시한 채 이혼경위나 아이의 유류품 인수 등에 대한 끈질긴 취재 요청이 있었고, 심지어 사망한 아이의 언니를 취재하기 위해 학교 화장실 안까지 불러들여 인터뷰를 시도하는 등 아주 과도한 취재경쟁이 있었다. 아이의 언니는 자신이 동생을 죽였다고 증언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새엄마의 강요로 거짓진술을 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동생의 죽음과 가정의 파탄, 진실을 밝혀 범행을 드러내게 한 결단까지, 어린아이가 숨쉬기도 버거웠을 거다. 그런데 인간이 감당키엔 너무도 버거

운 고통이 굵은 트라우마로 자리 잡았을 아이에게, 위로나 격려는커녕, 세간의 호기심을 만족케 하려는 취재경쟁을 하였으니 언니나 엄마에겐 아주 쓰라린 고통을 안겨주었을 거다.

나 또한, 예전에 이라크에서 사망한 김선일 사건의 유족들을 대리하면서 언론의 돌변으로 맘이 굉장히 아팠었다. 김선일은 엄청나게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였다. 그런데 언론이 초창기의 동정적 태도를 급변하여 피해자 유족이 터무니없는 배상을 요구한다느니, 가족사가 문제가 많다느니 갖은 공격을 일삼는 바람에 유족들이 죽음 같은 고통을 겪는 것을 목격했다.

사실 범죄피해를 둘러싼 언론의 과잉보도는 예전에도 몇 차례 공론화됐었다. 특히 2년 전, 온 국민을 격앙케 했던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가족은 언론의 과잉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제기했고, 지난 3월 법원은 "아동 성폭행 사건에 대한 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는 언론의 주장을 배척하고, 금전적 손해배상과 관련 기

사 삭제를 명하는 판결 두 건을 선고했다. 범죄 피해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가 다시 한 번 수면 위에 떠오른 지금, ‘명예훼손’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 한 판례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결론은 한마디로 말해 “공공성의 본질을 뛰어넘는 사생활 탐색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특히 범죄사건 보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가 범죄 형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의 내용과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

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며, 나아가 범죄의 사회 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생각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따라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나,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죄피해자나 그 가족의 인

적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정도의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으며 특히 언론보도로 말미암아 치명적

인 이차적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는 성폭행 피해자와 그 가족에 관한 보도의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1998. 7. 14. 선고 96다17257판결 등 참조)를 적용했다.

2년 전, 7살짜리 아이가 집에서 곤히 자고 있다가 이불째로 납치당한 후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사실이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언론의 보도경쟁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범죄 보도를 넘어 도에 지나친 과열이 시작됐다. 언론을 통해 아이 집 내부 사진이 공개되고, 어떤



2012년 9월 1일,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 피의자를 취재하기 위해 몰린 취재진
(출처 : 시사IN, 「그날, 언론이 흥기가 되었다」, 2014년 4월 21일자)

언론사는 범인의 이동 경로를 탐색한다고 항공 사진까지 동원한 상세지도를 내기도 했다.

그러더니 곧장 부모의 책임을 묻는 보도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몇몇 언론은 아이의 부모

들이 가해자와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범인이 집 구조를 정확히 알 수 있었다고 보도하고, 사건 당일 게임광이었던 아이 엄마가 전날 밤새 게임을 하다가 집 출입문도 잠그지 않은 채 잠이 들었고, 아이 아빠도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잠들었기 때문에 범인이 그런 대담한 수법으로 아이를 납치해 올 수 있었다는 보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보도가 연일 쏟아지면서 국민들의 비난은 가해자로부터 피해자 부모에게로 확산됐다. 개개 신상정보가 모두 공개된 가족들은 엄청난 슬픔으로 가슴을 치면서도 도망치듯 이사를 가야 했고, 주위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오랜 기간 감내해야 했다. 결국, 참다못한 피해자 가족들은 언론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모 신문사에 대한 첫 번째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19. 선고 2013가합50317판결)는 문제의 보도내용 중 ‘명예훼손’ 여부를 다룬 부분이 피해자 아빠에 대해 “당시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다”, “술을 매우 많이 마시는 사람이다”, “월수입은 150만 원이 채 안 된다”는 기사였고, 피해자 엄마에 대해서는 “게임광이다”, “당시 PC방에 있었다”,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가해자에게 가정환경을 상세히 알려주었다”는 것,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대장 파열, 질 열상, 얼굴에 붉은 치흔과 멍’이 있었다는 기사였다. 또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를 다룬 부분은 집 내부를 촬영한 사진

을 보도하고, 피해자 아빠의 월수입을 공개한 점, 집 내부구조 그림을 공개한 점, 피해자의 그림일기장을 촬영하여 기사화하고, 그림일기의 내용을 상세히 보도한 점, 피해자의 나이를 공개한 점, 집 외부 촬영사진을 게재한 점, 당초에 범행대상은 피해자의 언니였다는 점 등이다.

한편, 모 방송사에 대한 두 번째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19. 선고 2013가합50737판결)는 문제의 방영내용 중 ‘명예훼손’ 여부를 다룬 부분이 “피해자 엄마와 가해자가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당초에 범행대상은 피해자의 언니였다”는 내용이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를 다룬 부분은 집 내부 촬영 영상과 집 외관 조망 영상을 내보낸 점, 피해자가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내보낸 점 등이다.

먼저, ‘명예훼손’에 대한 판결 요지는 여러 쟁점 중 피해자 아빠가 “당시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다”, “월수입은 150만 원이 채 안 된다”는 내용과 “피해자가 대장 파열, 질 열상, 얼굴에 붉은 치흔과 멍이 있었다”, “당초에 범행대상은 피해자의 언니였다”는 내용은 그 자체만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피해자 엄마가 “게임광이다”, “당시 PC방에 있었다”,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가해자에게 가정환경을 상세히 알려주었다”고 보도한 부분과 피해자 아빠가 “술을 매우 많이 마시는 사람이다”라는 내용은 부모의 잘못으로 피

해자를 보호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니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했다. 다만, 명예훼손이 성립해도 “당시 PC방에 있었다”,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가해자에게 가정환경을 상세히 알려주었다”는 부분은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적시할 수밖에 없는 범위 내의 것이니 공공의 이익으로 인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에 대한 판결 요지는 피해자의 나이 및 집 내부구조 그림을 공개한 부분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이 되는 대상을 상당한 방법으로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피해자의 그림일기를 보도한 점, 집 내부 촬영 사진 및 피해자 아빠의 월수입을 보도

한 점, 그리고 주거를 침입하여 집 내부 촬영 영상 및 집 외관 조망 영상을 내보낸 점, 피해자가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내보낸 점 등은 이러한 상당성을 인정하기 힘들고, 특히 집 내부나 그림일기의 내용은 사생활 중 매우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동의 없이 사회 일반에 노출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과연 피해자의 고통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지 알 순 없다. 그래도 특히 범죄피해를 다루는 언론에 대해 보도의 한계를 그어준 사례라는 점에서 다소간의 경각심은 일으켰으리라 생각한다. 차제에 언론이 특히 범죄피해 보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피해자의 심정을 가지기를 바란다.

심판(審判) : 판단(判斷)과 결정(決定)



글 김상순
변호사, 이화여대 로스쿨 겸임교수



법률의 규정은 행위규범이지만 재판규범이기도 하다.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어떤 판단을 하여야 할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기준이 된다. 법관이 재판하는 절차인 소송절차는,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는 스포츠 경기 또는 시합에 많이 비유된다. 소송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등 두 편으로 나뉘어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상대방을 꺾어 '이기기' 위하여 노력한다. 소송에서 승리, 승소(勝訴)는 달콤하다.

스포츠 경기는 참가자들이 있고, 그들이 준수하여야 할 규칙이 있으며, 그 규칙의 준수여부를 살피는 심판이 있다. 영어로 판사는 'Judge'(저지)라고 부르고, 운동경기에서의 심판은 'Umpire'(엄파이어)라고 부른다. 얼핏 'Judge'는 능동적으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결단을 내리고, 'Umpire'는 수동적으로 규칙을 준수하는지만을 따지는 것 같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반대인 것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

이번 여름호에서는 참여자의 기량을 겨루는 '경기' 또는 '시합'을 골라, 이에 대한 승부를 판정짓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스포츠 경기를 다룬 영화 몇 편을 소개할 것인데, 각 경기마다 심판의 역할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먼저, 야구(野球)를 소재 및 주제로 다룬 영화 하나, 『머니볼(Moneyb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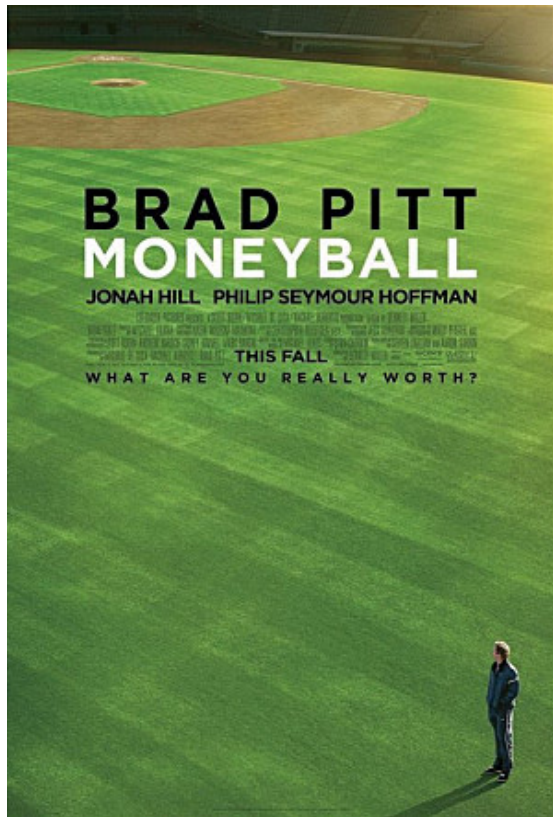
2011년 가을에 개봉된 『머니볼(Moneyball)』은 배우 브래드 피트(Brad Pitt)가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팀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단장인 빌리 빈(Billy Beane) 역할을 맡았다. 이 영화는 마이클

루이스가 쓴 경영학 서적인 『머니볼 : 불공정한 게임을 승리로 이끄는 과학(Moneyball : The Art of Winning an Unfair Game)』이 원작(原作)이다. 부족한 예산 탓에 선수들을 타 구단에 빼앗기던 ‘빌리 빈’은 경제학을 전공한 통계전문가인 ‘피터 브랜드’를 영입하여, 종래의 프레임(frame)과는 다른, ‘출루율’ 등을 중시하여 선수를 선발 기용하여 결국 승승장구를 이루어 낸다.

이 영화는 IT업계에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Big Data)를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예시로 널리 회자되었다. 이 영화 속에서 선수의 선발 및 배치 기준은 오로지 그간의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크기(Volume),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 등 3V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정확한 기준으로 분석해내는 빅데이터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야구경기에서 심판은 방금 투수가 던진 공이 스트라이크(strike)인지 볼(ball)인지 매번 지체 없이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신속하게, 방금 타자가 쳐 낸 공이 파울(foul) 라인 밖에 떨어졌는지 안에 떨어졌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주자가 아웃(out)인지 세이프(safe)인지를 결정해주어야 한다. 재량 가득한 심판의 손짓 한 번에 경기의 향방이 바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판사의 재량은 항상 넓은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적법절차가 준수되는지를 감시하는 정도로 그 재량이 축소될 수도 있고,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에 의해 한계를 가진다. 변론주의(辯論主義)란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심리 원칙을 말한다. 당사자가 제출하지도 않은 증거를 재판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처분권주의(處分權主義)란, 쟁송의 개시, 그 대상과 범위 및 종료에 대해 당사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머니볼(Moneyball, 2011) 포스터(출처 : 네이버 영화[movie.naver.com])

들에 대해 자유로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 법원이 임의로 더 넓은 범위를 인용할 수 없다.

이미 정형화된 사건들의 경우는 숙련된 탱고 댄스 커플처럼 원고의 소송대리인과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각자의 주장 순서와 증거제출 단계를 한 치의 오차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각자의 주장 법리와 반박 법리를 이미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사건에서 판사가 다른 결론을 내린다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법적 안정성의 입장에서라도 상급심에서 그 결론은 파기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변론의 알고리즘, 판결의 알고리즘이라 부를만하다.

알다시피, 공이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한 횟수가 3번이 되면 원아웃이 된다. 그런데 스트라이크에 대한 규정은 지극히 추상적이다. 스트라이크 존은 타자가 투수의 공에 대하여 배트를 휘두를 준비가 되었을 때의 타격자세(the batter's stance)에서 결정된다. 스트라이크 존은 타자의 무릎 하단 지점(at the bottom of the knees)부터 어깨의 상단 부분과 유니폼 바지의 상단 부분의 중간지점(at the midpoint between the top of the shoulders and the top of the uniform pants)까지 이루어진다. 매 투구마다 심판은 스트라이크와 볼의 일도 양단(一刀兩斷) 판정을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규정 자체도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는 데다가, 타자의 타격자세에 따라 스트라이크존이 달라지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좌(左)타자와 우(右)타자의 스트라이크 존도 다를 수밖에 없다. 심판의 위치는 포수의 뒤편인데, 시선을 속이려는 포수의 이른바 미트(mitt)질에 심판은 휘둘러서는 안 된다. 미트질이란 스트라이크 존을 살짝 벗어난 공을 잡자마자 재빨리 미트를 살짝 끌어당겨 심판의 판정을 유리하게 유도하는 행위를 뜻한다. 심판은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판정을 내려야 한다. 게다가 방망이를 휘둘렀는지 아니면 중간에 멈추었는지도 즉시 그리고 합리적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소송도 당사자의 '결과에의 합리적인 승복'을 이끌어내는 절차다. 물론 승복할 수 없는 오판에는 불복절차인 상소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판단과 결정에의 불복은, 야구경기에서도 빈번히 보이는 장면이다. 야구경기는 매 순간 판단, 판단, 판단의 연속이다. 수비수와 수비수 사이에 타자가 친 공이 떨어지면, 즉 공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 어느 누구의 글러브에 맞지 않았다면 이를 안타라 부른다. 잡을 수 있는 타구를 놓쳤다면, 이를 실책이라 부른다. '보통의 수비로 처리할 수 있는 타구'였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안타와 실책을 판단하게 될 텐데, 이 또한 '보통의 수비'라는 추상적 기준의 해석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예컨대, 소송에서 과실(過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평균인(平均人)의 주

의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쉽지 않은 일이고 다르기 때문이다.

스포츠는 상대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결정되는, 대부분의 기록경기는 혼자서 하는 스포츠에 해당될 테다.

두 번째 영화는 역도(力道)를 소재로 한 영화다. 2009년 여름에 개봉된, 박건용 감독, 이범수 주연의 영화『킹콩을 들다』. 은퇴한 역도 동메달리스트의 지도로 시골소녀들이 역도에 입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영화는, 실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하여 더욱 감동을 주었다. 영화 속에서, 시골소녀들이 번쩍들어 올린 역도선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이 극복해내야 할 킹콩만큼이나 크고 위대한 인물이다.

국제역도연맹(IWF)이 승인하는 역도경기는, 가로세로 4미터의 정사각형 크기의 경기대에서, 인상(Snatch)과 용상(Clean and Jerk)의 순서로 실시되는데, 각 종목에 최대 3번의 '시기'가 주어지고, 두 손으로 행해져야 한다. 대한역도연맹의 공인심판규정에서는 '심판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역도에서의 심판은 야구에서와 같은 광범한 재량을 가지는 심판과는 좀 달라 보인다.

규정에 등장하는 '부동자세'의 의미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심판마다 미세한 개 인차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심판원의 신호로 선수가 바벨을 내려놓게 되므로, 경기의 결과를 판정 짓는 사람이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참여자인 선수 스스로 안다. 내가 이 무게를 들 수 있는지 없는지, 들어 올린 것인지 아닌지. 역도는 중력이라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자연과의 우직한 싸움인 것이다. 어떻게 보면 역도경기의 실제 심판은 바로 선수 자기 자신이다.



킹콩을 들다(2009) 포스터(출처 : 네이버 영화[movie.naver.com])



금옥만당(金玉滿堂, The Chinese Feast, 1995) 포스터
(출처 : 네이버 영화[movie.naver.com])

야구와 역도에 이은 세 번째는 승자는 기뻐하고 패자는 슬퍼할 테지만 정작 관객들은 남은 결과물에 관심을 가지는 경기인, 요리(料理)를 다룬 영화다. 서극 감독의 1995년 작 『금옥만당(金玉滿堂, The Chinese Feast)』은 장국영이 주연을 맡았는데, 요리경연을 소재로 다루고 있다. 요리경연에서는 색(色), 향(香), 미(味), 의(意), 형(形) 등 다섯 가지 항목으로 3명의 심판들이 각 요리(조리된 음식)를 ‘판정’하고 있다. 요리대회에서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등의 여러 감각이 동원된다.

요리경기에서의 심판은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심판들만이 맛을 볼 수 있으니 관전자들에게 납득시키는 서사(敘事, narrative)가 필요하다. 맛, 향, 색깔, 재료 등 여러 가지 항목을 두어 세분화시키고 객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

나, 관중들에게도 이겼다 졌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각자가 만든 요리의 독특한 개성을 드러내는 일종의 전시(展示)라고나 할까.

재일 한국인 2세인 구수연 감독의 2007년 작 『불고기(燒肉ムービー プルコギ)』는, 요리대결의 소재를 ‘불고기(야키니쿠)’로 한정하여 다루고 있다. 어릴 때 헤어졌던 형과 아우가 요리대회를 통해 만나게 된다는 내용으로, 일본어를 사용하는 일본영화이지만 감독의 영향 탓인지 양념 바른 깻잎과 꽃감 등 한국의 정서를 담은 의미 있는 소품이 등장한다. 불고기의 재료인 빨간 고기(赤肉, 보통의 살코기) 구이와 하얀 고기(白肉, 곱창) 구이의 결투로 범위를 최대한 좁혀서 집중적으로 다룬 것도 인상적이었다.

승패를 떠나서 그 과정 자체를 즐기고 그 경기의 결과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요리대결을 다룬 영화는 언제든 어디서든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어 있다. 요리 대결에서의 판단과 결정은 당사자가 심판의 권위와 서사에 수긍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참여 당사자가 상

대방의 경기를 바라보고 그 경기의 결과물을 직접 먹어서 스스로 판단(自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경기와는 독특한 구조이다. 시합이 끝난 후 만들어진 요리를 함께 먹게 될 관람객 모두가 실은 요리 경기에서의 진정한 심판이다.

판단과 결정은 비단 판사의 몫만은 아니다. 수사를 계속할지 말지, 구속 상태로 수사를 할지 말지, 기소를 할지 말지, 증거를 제출할지 말지 등 검사도 매 순간 판단과 결정을 내린다. 상담을 하고 수임을 할지 말지, 변호를 맡을지 말지, 증인신청을 할지 말지, 화해권고 결정에 응할지 말지 등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어느 직역이나 그렇다. 리걸마인드(legal mind)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규칙에 대하여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단과 결정을 내포하고 있다.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혹은 ‘공익의 수호자’로서, 법조인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또는 어떤 결정을 관철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당사자 및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다. 그렇다면, 이러한 판단과 결정은 어떠한 근거에서 무엇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 혹시 스스로 그 판단의 기초가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다음 가을호에서는 이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행복한 여름 보내시길 빈다.



불고기(焼肉ムービー-ブルコギ, 2007) 포스터(출처: 네이버 영화 [movie.naver.com])

일본 언론의 인격권 침해에 관한 판례동향

- 최근의 최고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글. 고철웅
동경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민법전공



쪽의 요구를 절대적으로 우선시하기보다는 서로에게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해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역이 바로 인격권 문제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에서의 최근 몇 건의 판결을 소재로 하여, 개인과 언론 그리고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인격권 분쟁의 해결 모습과 그것이 시사하는 바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는 비록 일본 사회의 특수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 하나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 결코 보편타당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한국 사회에서도 참고할 만한 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기에 무의미한 작업은 아닐 것이다.

1. 들어가며

언론과 관련된 개인의 인격권 분쟁은 항상 개인과 개인이 속하는 사회 간의 이익 충돌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양자 간의 이익 조정이라는 숙명적 과제를 안고 있다. “가장 개인적인 문제가 가장 사회적인 문제다”라는 말이 있듯이, 개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인격권은 개인의 내밀한 부분에 관련되기 때문에 가장 사적인 문제이나, 반대로 사회의 관점에서 본다면 공공의 이익이 관련되어 가장 공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분쟁해결에서는 두 당사자 중 어느 한

2. 통신사가 제공하는 기사에 관한 신문사의 명예훼손 여부

1835년 프랑스인 아바스(C. L. Havas)에 의해 최초로 근대적 통신사가 생긴 이래로, 기사에서 ‘신속함’과 ‘정확함’이라는 가치를 동시에 만족시키고자 통신사와 신문사는 협업에 의한 시

시스템 구축으로 오늘날까지 미디어를 선도해 왔다. 그러나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회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두 가치의 조화를 달성하기가 점점 어렵게 되었고, 현실적으로 전자를 우선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짐으로 인해,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는 일본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명예훼손에 관한 다음의 두 판결은 통신사로부터 받은 기사를 실질적 변경 없이 그대로 내보냈을 경우에 신문사가 그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을 지는가가 문제가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반대되는 결과를 낳고 있어 흥미로운 점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제1판결에 대해 보자.¹⁾ 형사사건의 피고인인 원고가 자택에서 대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통신사의 기사를 신문사가 그대로 게재하였다. 이에 원고는 신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²⁾ 원심에서는 통신사가 사회적 신뢰성이 높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도를 진실이라고 믿은 점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최고재판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본건 배포기사와 같이, 사회의 관심과 흥미를 끄는 사인의 범죄행위나 스캔들 혹은 이에 관련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분야에 있어서의 보도는 통신사로

부터 배포 받은 기사를 포함해 보도가 가열됨으로 인한 나머지 취재의 신중함이 결여된 진실이 아닌 내용의 보도가 종종 보이며, 취재를 위한 인적·물적 체제가 정비되어 일반적으로는 그 보도내용에 일정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통신사로부터의 배포기사라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해당 배포기사에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에 대해서 높은 신뢰성이 확립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신문사가 통신사로부터 배포를 받아 자기가 발행하는 신문에 게재된 기사가 상기와 같은 보도분야의 것이고, 이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가지는 경우에 해당 게재기사가 위와 같은 통신사로부터 배포된 기사에 의거한 것이라는 점만으로 기사를 게재한 신문사가 해당 배포기사에 적시된 사실에 확실한 자료,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여 동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 것에 일리가 있다고까지 말할 수 없으므로, 해당 신문에 동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 점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밑줄, 필자).”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기사의 적시된 사실에 관하여 공공성, 진실성, 상당성에 비추어 판단을 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한 선행판례가 존재한다.³⁾ 또한, 기사를 작성한 신문사 자신에 의한 독자적인 취재가 존재한다거나 정보원의

1) 最判平成14年(2002년)1월29日民集56卷1号185頁

2) 본 사건 원고는 언론사를 상대로 본인의 기사에 관하여 약 500여 건의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본인의 힘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사회적 주목을 받았고, 이를 책으로도 집필하였다. 三浦和義『弁護士いらず：本人訴訟必勝マニュアル』太田出版 2003年.

3) 最判昭和41年(1966년)6월23日民集20卷5号1118頁

신뢰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상당성을 인정한 선행판결도 있다.⁴⁾ 이와 같은 선행판결들에 비추어 볼 때, 제1판결은 위의 밑줄 친 부분에 관하여 기존의 판결과는 다른 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는 제2판결을 보기로 한다.⁵⁾ 의사의 기본적인 실수로 환자가 죽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통신사에서 작성하여 신문사에 배포하였고, 이를 수정 없이 기사로 게재한 신문사에 대해 의사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 등을 청구했다. 1심은 통신사의 경우 오보를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였으나, 그것을 신문사가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신문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2심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실적시행위에 대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며, 신문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최고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신문사가 통신사로부터 배포 받은 기사를 자기가 발행하는 신문에 게재한 경우에 있어서, 적어도 해당 통신사와 신문사가 기사의 취재, 작성, 배포 및 게재라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보도주체로서의 일체성을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신문사는 해당 통

신사를 취재기관으로 이용하고, 취재를 대행시킨 것으로, 해당 통신사가 해당 배포기사에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 점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당 신문사는 해당 배포기사에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에 의문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게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가 발행하는 신문에 게재된 기사에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 점에 있어서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이유는 신문사가 게재한 기사가 통신사 배포에 의거한 기사라는 취지의 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를 바가 아니다(밑줄, 필자).”

제1판결과 제2판결의 제일 큰 차이점은, 제1판결에서 통신사와 신문사 간의 관계는 ‘기사 배포계약’을 체결한 계약관계에 있으나, 제2판결에서 양자의 관계는 신문사가 통신사의 ‘가맹사’라는 점이다. 제2판결에서 통신사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알려진 교도통신사(共同通信社)이고 신문사는 지방에 있는 조그만 신문사인데, 해당 신문사는 자사의 신문발행지역 외에 취재거점 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교도통신사로부터 송신되어 오는 기사를 전부 상세히 조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제2판결은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보도주체로서의 일체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통신사와 신문사가 서로 다른 주체가 아니라 기사제공에서는 ‘일

4) 最判昭和47年(1972년)11월16日民集26卷9号1633頁、最判昭和55年(1980년)10월30日裁集民131号89頁
5) 最判平成23年(2011년)4월28日民集65卷3号1499頁

체'라고 하여 신문사가 그 기사를 진실로 믿은 점에 대해 상당성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반면에 제1판결은 아무리 저명한 통신사로부터 제공된 기사라고 하더라도 사인의 범죄행위나 스캔들 등의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 보도의 경우에는 신문사가 좀 더 신경을 써 보도해야 한다는 일종의 규범적 판단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사배포계약을 통해 기사의 소재 거리를 제공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소스가 그대로 기사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기사배포계약은 어디까지나 소스의 다양성 확보가 그 목적이기 때문에 "신뢰는 하되 의심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상기시킨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기사의 당사자가 공인인가 사인인가에 대한 논쟁이 존재한다. 공인의 경우에는 공익의 측면에서 기사를 진실이라고 믿은 점에 대하여 상당성의 인정의 폭이 좀 더 넓어진다.

3. 초상의 허락 없는 공표와 상업적 이용

1) 最判平成17年(2005년)11月10日民集59卷9号 2428頁

원고는 1998년 와카야마(和歌山) 시에서 열린 마을 축제 때 카레라이스에 독극물을 넣어 4명이 사망하고, 63명이 상해를 입어 제기된 형사사건의 피고 부부 중 한 명이다. 형사사건의 1심 첫 공판은 45명 방청석에 5,220명의 방청희망자가 나왔고, 이는 사건발생 전에 무명인이었던 사람으로서는 최고기록이었다. 형사소송은 2009년에 최고재판소에서 사형이 확정되었으나, 재심청구를 하여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



FOCUS 1999년 5월 26일호, 4-5페이지 (제1기사)



FOCUS 1999년 8월 25일호, 8-9페이지 (제2기사)
 위: (그림 1) 아래: 좌 (그림 2), 우 (그림 3)

이다. 잡지사 FOCUS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 원고의 첫 공판 사진을 기사와 함께 게재하였다. "법정을 비웃는 X(원고 이름)의 독극물 카레 첫 공판-이 괴물을 재판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웃음을 띤 사진과 함께 기사를 게재했다(제1기사).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고, 다시 잡지사는 "초상권으로 본지에 소송을 건 X 님께-그림이면 어떻게 될까요?"라는 제목으로 원고를 비난하는 기사와 캐리커처를 실었다

(제2기사). 원고는 제1기사에서 본인의 초상권이 침해되었고, 제2기사에서는 수갑, 허리줄 등 신체가 구속된 모습을 그린 점이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비난하는 기사내용은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었다고 하여 불법행위 일반규정인 일본 민법 709조 등에 의거해 위자료를 청구했다. 1, 2심에서는 취재, 보도행위가 공익성, 상당성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제1기사는 촬영방법이 상당성의 요건에 위배되며, 제2기사는 공익성의 요건에 위배된다고 하여 원고의 초상권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를 인정하였다. 사진이나 일러스트나는 개인의 용모 묘사의 수단일 뿐 초상권 침해에 본질적 문제는 아니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최고재판소는 불법행위를 일부 인정하였으나, 사진과 일러스트에 대해서 그 법리 구성을 달리했다. 먼저 사진에 대해서 “사람은 함부로 자신의 용모 등을 촬영 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법률상 보호되어야 하는 인격적 이익을 가진다. 사람의 용모 등의 촬영이 정당한 취재행위 등으로 허락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자의 용모 등을 본인의 허락 없이 촬영하는 것이 불법행위상 위법이 되는지 여부는 피촬영자의 사회적 지위, 활동내용, 촬영장소, 촬영목적, 촬영양태, 촬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촬영자의 상기 인격적 이익의 침해가 사회생활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사람은 자기의 용모 등이 촬영된 사진이 함부로 공표되지 않을 인격적 이익도 가진다고 해석하

는 것이 상당하며, 사람의 용모 등의 촬영이 위법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그 용모 등이 촬영된 사진을 공표하는 행위는 피촬영자의 상기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을 가진다고 해야 한다(밑줄, 필자).”고 판시하였다. 제1기사에서는 재판소의 허락 없이 소형카메라를 몰래 숨기고 법정에서 들어와서 촬영한 점,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가 법정에서 출두한 상황에서 이를 본인의 허락 없이 대중에게 공개한 점이 수인한도를 넘어서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하였다.

다음으로 일러스트에 대해서는, “사람의 용모 등을 촬영한 사진은 카메라 렌즈가 찍은 피촬영자의 용모 등을 화학적 방법 등에 의해 재현한 것이고, 그것이 공표되었을 때는, 피촬영자의 용모 등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받아들인다. 이에 반해, ... 일러스트화는 그 묘사에 작가의 주관이나 기술이 반영되어 있어, 그것이 공표된 경우에도 작가의 주관이나 기술을 반영한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 사진과는 다른 일러스트의 상기특질이 참작되어야만 한다(밑줄, 필자).”고 판시하였다. 제2기사의 그림 2, 3은 법정 내의 모습을 공개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써 사회적으로 용인된 행위므로 수인한도를 넘은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림 1은 “원고가 수갑, 허리줄에 의해 신체를 구속당한 상태를 그린 것으로 그러한 표현 내용의 일러스트화를 공표하는 행위는 원고를 모욕하고, 원고의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것이라

고 해야 하며, ... 불법행위법상 위법이라고 평가해야 한다(밑줄, 필자).”고 하였다.

본 판결은 다음의 두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먼저, 1, 2심에서 판시한 ‘초상권’이라는 용어를 피하고, 최고재판소는 ‘용모 등을 촬영 당하지 않을 이익’ 혹은 ‘용모 등을 함부로 공표 당하지 않을 이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초상권이라는 용어는 종래의 학설 및 하급심 판결에서 종종 사용되어 온 용어이긴 하지만, 굳이 판례상의 용어로서 정면으로 인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⁶⁾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04년에 개정된 일본 민법 709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 자는 이에 의해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권리’가 아니더라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하면 손해배상이 가능하며, ‘초상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인격적 이익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⁷⁾

둘째로,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공표는 대상자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다는 점이다. 누구라도 수갑이나 허리줄로 자신의 신체가 구속당한 모습의 공개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

다. 비록 일러스트가 화가의 저작물로서 그 저작권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절대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당사자에게 ‘모욕’을 주거나 ‘명예감정’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판결에서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틀로써 분석이 가능하며, 인격권의 관점에서 ‘인간의 존엄’을 어떻게 연결지어야 할 것인지는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 판결이 초상의 공표에 관한 판결이었다면, 다음 판결은 초상의 영리 목적에 의한 이용에 관한 판결이다. ‘초상권’을 명시하지 않은 위 판결과는 달리 다음 판결은 ‘퍼블리시티권’을 명시하였다.

2) 最判平成24年(2012년)2월2日民集66卷2号 89頁

본 사건은 과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지지를 받았던 ‘핑크 레이디’⁸⁾라는 여성 듀오 가수로 활동하던 자가, 본인의 사진이 무단으로 주간지에 게재된 것에 대해 초상이 가지는 고객흡인력을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여 주간지 발행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본 사건 기사는 핑

6) 이 판결도 인용하는 과거의 最大判昭和44年12月24日刑集23卷12号1625頁에서도 ‘함부로 용모 등을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초상권’이라고 표현할 것인지 말것인지는 따로 두고”라고 판시하며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의 하나로 인정하였다. 이 판결과 비교해 볼 때, 용모 등을 촬영/공표 당하지 않을 이익을 ‘초상권’이라고 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그렇게 표현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이익이 ‘초상권’에 포함될 수도 있고, ‘사생활 존중권’에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포함됨으로 인해, 다른 한쪽에 포함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게 되는 것을 피하려는 감춰진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7) 2004년 개정은 명치시대 이후로 사용되었던 표기를 알기 쉽게 바꾸었다는 ‘형식적’ 개정이 주목적이라는 것이 입법자의 설명이나, 709조의 ‘권리’를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개정된 점은 ‘실질적’ 개정에 해당한다고 보는 관점이 유력하다.

8) 핑크레이디는 1976년에 데뷔한 이후, 1981년에 해체했으나, 2010년에 다시 활동을 재개하였다.



女性自身 2007년 2월 27일호, 16-17페이지



女性自身 2007년 2월 27일호, 18페이지

크 레이디의 안무를 다이어트에 이용하는 것으로써 다이어트에 관한 설명, 일러스트와 함께 흑백 안무 사진 14장이 사용되었다. 1심에서는 성명, 사진의 게재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되려면, ‘오로지’ 원고의 고객흡인력에만 입각하여 사용되었을 경우라고 하

며, 본 기사는 고객흡인력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만이 목적은 아니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심에서는 성명, 사진을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한 점이 쟁점이 되었다. 저명인이 되는 과정에서 본다면 성명, 초상이 이용되더라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록 상업적으로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용이 허용 가능한 범위 내라고 판시하였다. 최고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지만, 다음과 같이 퍼블리시티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점이 주목받았다. “사람의 성명, 초상 등(이하, 초상 등이라 한다)은 개인의 인격의 상징이기 때문에, 해당 개인은 인격권에 유래하는 것으로 이것을 함부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초상 등은 상품의 판매 등을 촉진하는 고객흡인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고객흡인력을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권리(퍼블리시티권)는 초상 등 그 자체의 상업적 가치에 의거하기 때문에 상기의 인격권에 유래하는 권리의 한 내용을 구성한다.” 라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불법행위법상 위법이 되기 위해서는 1. 초상 등 그것 자체를 독립적으로 감상의 대상이 되는 상품 등으로 사용하거나, 2. 상품 등의 차별화를 위한 목적으로 초상 등을 상품 등에 첨부하거나, 3. 초상 등을 상품 등의 광고로 사용하는 등, ‘오로지’ 초상 등이 가지는 고객흡인력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였다.⁹⁾

9) 金築재판관의 보충의견에서는 1. 브로마이드, 그라비아 사진, 2. 캐릭터 상품을 그 예로 들고 있다. 또한 ‘오로지’라는 문언을 하나라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점이 있으면 배척된다는 것과 같이 과도하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본 판결은 ‘오로지’ 기준을 채용한 점에서 종래의 다른 학설을 배제하고, 통일적 해석의 길을 열었다.¹⁰⁾ 퍼블리시티권은 표현의 자유와의 법익 대립이 존재하는데,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범위를 일정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오로지’ 기준을 채택한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 ‘오로지’ 고객흡인력의 이용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욱 자세히 3요건을 설명하여 제시하였다. 본 판결의 이론적 의미로는 퍼블리시티권이 “인격권에 유래하는 권리의 한 내용을 구성한다”고 판시한 점이다. 종래에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질이 재산권인지 인격권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하급심 판결에서는 과거 재산권설이 일부 유력하였으나, 2005년 이후로는 인격권설이 주류가 되었다.¹¹⁾ 재산적 측면이 강한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인격권을 그 법적 근거로 삼음으로 인해, 인격권이 재산권과 양립한다는 이해, 즉 재산권 vs 인격권에 관한 이분법적 사고는 본 판결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로 인해, 재산뿐 아니라 초상과 같은 인격적 특성 또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게 된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인격권 또한 재산권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보

아야 하며, 이와 같은 이해를 본 판결은 전제하고 있다.¹²⁾

4. 결론에 갈음하여

이상과 같이, 살펴본 판결 하나하나를 법리적으로 하급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선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사회적인 관례 형성에도 큰 영향을 끼친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일본에서의 개인이란 단체 나아가 사회라는 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현재에도 쉽지는 않다. 특히 절대적 선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공익이라는 가치 앞에서 개인은 더더욱 약한 존재가 되기 쉽다. 다만 2000년 이후 나타난 몇 판결에서는 언론이라는 거대 집단이나 언론을 통해 만들어지는 ‘사회’와 마주하여 개인이 조화를 이루어 나가되, 자신의 존엄에 관하여서는 조금씩이나마 최소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개인과 집단, 사회의 관계가 서구에 비해서 일본과 유사하나 세부적으로는 다른 한국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새로운 관계정립을 통한 한국적 규범을 형성하는 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

10) 종래의 학설로는 초상 등이 출판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상업적으로 이용되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상업적 이용설’, 본건 원심과 같이 다양한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상 등에 관한 배타적 이용을 침해하였는지 판단하는 ‘종합고려설’ 등이 있었다.

11) 재산권설로는 名古屋地判平成12年1月19日判タ1070号233頁、名古屋高判平成13年3月8日1071号294頁 등, 인격권설로는 東京地判平成17年6月14日判タ1217号310頁、東京地判平成17年8月31日判タ1208号247頁、東京地判平成22年10月21日 Westlawjapan2010WLJPCA10219002(배움준 사건) 등.

12) 이에 대하여는 안병하, 무형의 인격표지의 상업적 이용에 내재된 위험성, 연대법학연구 19권 3호, 2009년, 247페이지 이하, 동, 인격권의 재산권적 성격-퍼블리시티권 비판 서론, 민사법학 45권 1호, 2009년, 7페이지 이하 참조.

증권가 정보지(‘찌라시’) 내용을 보도한 언론의 법적 책임



글. 임상혁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증권가 정보지의 문제점을 지적한 mbn보도(출처 : mbn, 「악성루머 양산 증권가 찌라시 '도마 위」, 2008년 10월 4일)

1. 들어가며

인터넷 기술의 발달은 사회, 그리고 개인들의 전통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개인들은 인터넷 포털이나 뉴스 서비스, SNS 통신 등 각종 비 전형 정보원으로로부터도 많은 정보를 얻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들은 인터넷 바다를 통해서 삼시간에 전국민의 의사결정에 그리고 정서에 많은 영향을 준다.

인터넷 매체의 등장은 기존 언론들의 활동 방식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인터넷에 기반을 둔 언론들은 기존 매체들로 하여금 속보경쟁에 내몰리게 했고, 이러한 속보경쟁은 필연적으로 언론의 정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는 한다. 인터넷상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근거한 기사들의 법적 책임이 대표적이다. 본 기고문에서는 이러한 ‘확인되지 않은

1) ‘찌라시’라는 단어는 일본어에서 유래된 단어이고 표준어도 아니다. 해당 단어가 ‘근거와 출처를 알 수 없는 짤막한 글’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널리 쓰이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찌라시’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정보' 중에서 소위 '짜라시'²⁾에 근거한 언론보도의 법적 책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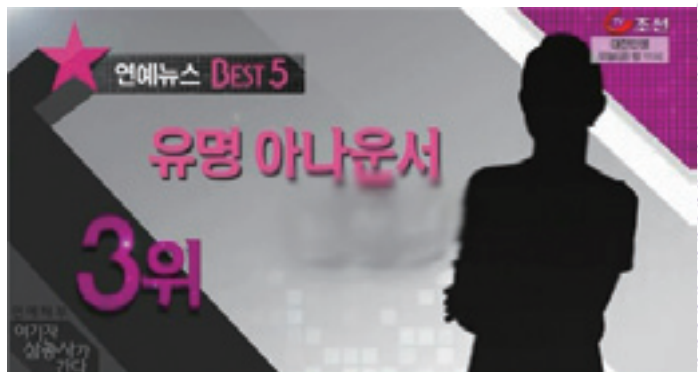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짜라시'로 일컫는 문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하고 일정한 구독료를 지불하는 구독자들에게 제공되는 '사설 정보지'와, 이와 달리 출처나 작성자도 알 수 없으며 제각각의 형식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배포되는 소위 '증권가 짜라시'의 두 가지이다. 그렇지만 정보출처의 명확성이나 정보내용의 정확성 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²⁾에서 두 가지 문건은 명예훼손법제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어 보인다.

과거 짜라시는 종이나 디스크에 복사되어 유통되었으나, 최근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보다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이나 밴드 등 소위 폐쇄형 SNS 매체들의 등장은 이러한 정보의 유통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짜라시들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확인되지 않은 온갖 소문들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소위 이러한 '카더라 통신'은 대중들의 엿보기 흥미에 기반을 두며 나름 확고한 시장을

형성했다.

문제는 이러한 짜라시 내용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정치인, 경제인, 특히 연예인들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나 은밀한 사생활 등을 담고 있어서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당사자들이 이러한 고통을 참지 못해 짜라시를 작성한 사람 혹은 유포한 사람들을 처벌해 달라며 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고 확대·재생산됨에 따라 나타나는 해악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배우 최진실의 자살 사건 등이다. 최근 아나운서 황수경 씨도 짜라시를 근거로 '황수경 씨 부부의 파경설'을 보도한 TV조선 본부장 및 방송인 출신 기자에게 5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



황수경씨 부부의 파경설을 보도한 TV조선 '여기자 삼총사가 간다' 프로그램 캡처 (출처 : TV조선, 『연예해부, 여기자 삼총사가 간다』, 2013년 9월 6일)

2) 일부 정보지들은 아예 표지에 '출처나 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삽입하기도 한다.

을 제기하고, 이와 함께 해당 사실을 유포한 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결국 TV 조선이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며 공개 사과하고 황수경 씨가 소를 취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년 12월 인터넷 블로그에 황수경 부부의 파경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31살 홍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러한 사건은 소위 'B급 언론'으로 치부되던 짜라시가 이제는 주류 언론에 보도의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씩씩한 면이 있지만, 한편으로 인터넷매체와 속보 경쟁에 시달리는 한국 언론의 취재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래에서는 기존 명예훼손 법제에서 짜라시가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는 사실에 대한 확인 없이 출처 불명의 짜라시를 그대로 보도한 언론의 법적 책임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2. 언론의 자유의 한계 : 명예권과의 관계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³⁾ 언론의 자유란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민주사회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으로 인정받는다. 한편 명예권은 인간의 존엄에서 유래

하는 인격권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권리로, 이는 표현의 자유 못지않게 보호되어야 한다.⁴⁾

언론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근거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가능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나, 언론도 책임을 수반하는 자유를 가지므로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즉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국가로부터의 언론 자유가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졌으나, 오늘날에는 오히려 언론 자유의 핵심은 국가로의 자유로 변화하고 있다. 즉, 언론과 개인 간의 법적 충돌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국가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달라는 소송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으며, 여기에 과연 국가는 어떤 입장을 말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최대 난제로 등장한 것이다.

두 권리의 관계에 대하여 헌법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⁵⁾ 또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⁶⁾라고 하여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3) 헌법 제21조 제1항

4)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판결

5) 헌법 제21조 제4항

6) 헌법 제37조 제1항

이러한 헌법상 추상적인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이한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이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타인의 인격권인 명예는 모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두 권리의 우열은 쉽사리 단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중략)…국민의 알권리와 다양한 사상·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기본권이고, 명예 보호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하는 기초가 되는 권리이므로, 이 두 권리를 비교형량하여 어느 쪽이 우위에 서는지를 가리는 것은 헌법적인 평가 문제에 속하는 것이다”⁷⁾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도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⁸⁾하고 있는바, 결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언론의 자유와 명예권이라는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제반 이익들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결정하자는 소위 ‘이익형량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3. 찌라시를 그대로 보도한 언론의 법적 책임

가. 형법과 민법의 조항

헌법의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화하는 책임을 부여받은 하위법률은 민법과 형법이다. 우선 형법은 제307조 내지 제309조에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와 공연히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 제310조에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은 제750조 및 제751조에서 일반 불법행위의 일종으로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를 규율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논리구성은 위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구성요건 및 위법성 구조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민법과 형법의 규정들이 개별 사안에 해석·적용되기 위해서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언론의 자유와 명예권이라는 두 기본권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이하에서는 찌라시와 문제되는 쟁점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7) 헌법재판소 1999. 6. 24. 97헌마265 결정 등

8)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키29 판결 등

나. 익명 보도와 피해자의 특정

짜라시에서 특정인의 실명이 그대로 나타나
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며(특히 사적인 사안의
경우), 이보다는 익명 혹은 이니셜만으로 지
칭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위 황수경씨에
관한 TV조선의 보도 내용 역시 방송에서 실
명의 언급은 없었다.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우선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보도
가 있더라도 도저히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도 없을 것이며,
따라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명예훼손
관련 소송에서도 의외로 자주 쟁점으로 등장
한다.

현재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은 ‘특정성’에
관하여 완화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기사
에서 반드시 특정인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
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
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頭文字)
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
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
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
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해석한다.⁹⁾ 기
사 자체에서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되었을 때
에만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한다면 오히려 부

정확한 기사나 사실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사가 면죄부를 얻기 쉬워지는 자기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당연한 논리라고 할 수 있다.

다. 위법성의 판단

(1)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대법원의 판시
내용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
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진실성과
공익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위법
성이 없어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
원은 좀 더 넓게 해석하여 보도 내용이 진실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도자가 그것을 진실
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상당한 이유가 있
는 경우에는 형법상·민법상의 위법성이 조
각된다고 해석한다.¹⁰⁾

형법 제310조는 헌법상 개인의 명예와 표
현의 자유라는 상충하는 두 법익 간의 조화에
대한 중대한 책무를 이행하는 핵심적인 조항
이지만, 한편으로 언론의 ‘숨 쉴 공간’에 대한
정책적 고려이기도 하다. 결국 법원은 두 법
익 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하여 보도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없더라도 보도
자가 그것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이러한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

9)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10)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2) 상당한 이유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즉 ‘상당성’에 관하여, 대법원은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① 적시된 사실의 내용, ②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③ 사실 확인의 용이성, ④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해석기준을 제시¹¹⁾하고 있다. 또한 그 판단 시점은 보도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 그 후에 드러난 객관적 사실이나 자료도 참고한다고 한다.¹²⁾

(3) 구체적인 판례 사안

상당성을 인정하여 위법성을 부정한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① 일간 신문사 기자가 구속영장 사본을 열람하여 피해자에 대한 혐의사실을 알게 되고, 수사담당 검사에게 취재를 요청하여 다른 기자들이 동석한 가운데

수사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피의사실을 취재하여 이를 보도한 사안에서, 취재원이 해당 사건 수사를 직접 담당한 검사인데다가 사적인 정보가 아니라 소정의 절차에 의한 발표 형식을 취하고 있고, 사건 당사자는 구속되어 있어 직접 취재를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기는 쉽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법성이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판결)

- ② 백범 김구 선생 암살사건을 다룬 논픽션 드라마에서 배후로 묘사된 자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하여, 백범 암살 사건은 관련자들이 대부분 이미 사망하여 과거 진술 내용을 수집하여 조사하는 외에는 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고,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드라마에서 김창룡을 백범 암살의 배후로 묘사한 것은 진실성이 명백히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억측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계자들의 발언 내용 등 여러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위법성이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

11)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79262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55510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12) 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29928 판결

반면 상당성이 부정되어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① 이른바 ‘이해찬 국무총리 양주파티’ 사건에서, 국무총리 일행이 ‘양주파티’를 하였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기자가 어느 시민의 제보를 받아 기사를 작성하였으며, 당시 위 기자가 총리실 관계자로부터 ‘양주파티는 아니고 저녁 식사에 반주 한두 잔 곁들인 것일 뿐’이라는 해명을 들었음에도 제대로 취재하지도 않은 채 ‘양주파티’라는 자극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위 기사에는 다분히 악의적인 요소마저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53805 판결)
- ② 상습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이 유명 연예인으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진술한 수사기록을 열람한 기자가 이를 그대로 보도한 사안에서, 성 접대 여부는 상습사기사건 수사의 초점이 아니었으므로 수사 담당 검사는 유명 연예인의 접대행위 여부에 대한 아무런 보강수사를 하지 않았다. 위 박○○은 1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에는 자신을 접대한 사람이 유명 연예인이라는 진술을 하지 않다가 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비로소 이러한 사실

을 진술하였으며, 위 기자가 열람한 수사기록은 피의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없는 사실, 관련 연예인들이나 소개인들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을 통하여 위 진술이 진실인지 비교적 용이하게 검토할 수 있었고 또한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를 요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어 그러한 조사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등을 들어 상당성을 부정한 사례(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

- ③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는 일반 시청자 등이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쉬운 반면에 신속성의 요청은 일반 보도에 비하여 그다지 크다고 할 수가 없으므로, 그 방송에 있어서는 단순히 풍문이나 억측, 일방적인 제보가 아닌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보다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방송의 기초가 되는 그 자료 내용의 진위를 당사자 본인이나 그 주변 인물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의 충분한 조사활동을 사전에 거침이 마땅하고, 이러한 확인 내지 조사활동을 거치지 아니한 채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긴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다면 방송사 측에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4) 소결

이상과 같은 대법원의 태도에 비쳐 볼 때, 대법원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 상당성이 있는 경우란 단순한 소문이나 추측, 일방적인 제보에 바탕을 두고 보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내용이 진실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나름 ‘합리적인 근거나 자료’가 있는 경우인지를 의미하며, 특히 본인에 대한 확인의무를 다하였는지가 중요한 요소이다.

과연 어떤 근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상당성’이 인정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논문이나 학술지,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발표 등은 상당성을 인정받기 쉬운 것이다. 나아가 소설이나 다른 언론기관의 기사 등도 작성자의 권위나 신뢰에 따라서는 상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증권가의 짜라시는 ① 발언자나 작성자가 누구인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② 사실의 정확성에 관한 사회 통념상 용인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것¹³⁾ 등을 고려할 때, 취

재활동의 동기라면 몰라도, 다른 자료¹⁴⁾의 도움이 없이 단순히 짜라시의 내용만을 믿고 기사를 작성했다면 ‘상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공적 인물에 관한 이론

공적 인물에 관한 이론은 공직자의 공적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그 표현행위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에 의하여 행해졌음이 증거에 의해서 입증되어야 한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1964년의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판결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공적 인물과 사인, 공적인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고,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은 공적 인물이 그의 공적 활동과 관련된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하는 등 개별사례에서의 이익형량에 따라 그 결론도 달라지게 된다”고 설명¹⁵⁾한 바 있다.

또한, 대법원도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私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公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

13) 짜라시 자체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내세우는 경우도 많다.

14) 특히 피해자에 대한 확인절차가 대표적이며, 만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입장 등도 주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15) 헌법재판소 1999. 6. 24. 97헌마265 결정 등

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라고 판시¹⁶⁾하여 공적 인물 이론을 수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적 인물(public figure)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정치인¹⁷⁾, 재벌그룹의 회장¹⁸⁾, 언론인¹⁹⁾, 연예인²⁰⁾을 공적 인물이라고 판단한 것이 있다.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보면, 짜라시에서 언급되는 정치인, 경제인, 연예인 등은 대부분 공적 인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공적 인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에서 논한 상당성 역시 모두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다. 다만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언론의 감시기능 혹은 비

판기능을 고려할 때 상당성의 기준이 좀 더 완화되어 적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무리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결혼이나 이혼, 성적 문제 등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한 사항으로 공적 관심사(public concern)에 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대한 보도는 여론의 형성이나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라는 언론자유의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짜라시의 많은 내용이 연예인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자극적인 내용으로서 이는 단순한 대중적 호기심의 대상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 공인에 대한 평가와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나아가 출처도 작성자도 알 수 없이 짤막한 글의 형태로 무작위로 유포되는 짜라시를 익명의 신뢰할 만한 취재원이라고도 보기도 어렵고, 짜라시에 담긴 내용은 대부분 신속한 보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인정받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인에 대한 사실확인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짜라시만을 그대로 보도·유포하는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가 피해자의 인격권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언론기관이나 언론인은 그에 따른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16)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판결

17) 부산고등법원 1992. 6. 17. 선고 92노215

18) 서울지방법원 1995. 9. 27. 선고 95카합3438 판결

19) 서울지방법원 1997. 9. 3. 선고 96가합82966 판결

20) 서울지법 2001. 12. 19. 선고 2001가합8399 판결

3. 마치며

이상에서 찌라시의 내용만을 믿고 보도한 기사가 우리나라 법제에서 면책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언론으로서 스스로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고 다른 언론 기사를 믿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면책되기 어려운 현실에서, 소위 '카더라 통신'의 대표적인 예인 찌라시를 믿고 그대로 보도를 했다면 언론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기사에 대한 사회적 용인을 주장하기 힘들다고 해석된다.

언론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감시견이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얼굴 하나는 부단히 사

회를 감시하며 짚어야 하고, 또 하나의 얼굴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의 확인 여부는 단순한 소문과 언론보도를 구별하는 근거가 되며, 또한 언론을 일부 저급한 사이버언론과 근본적으로 차별화하는 작업이라 할 것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정보주체가 저마다 정보를 만들어내는 환경에서 언론이 시중의 소문을 보도함에 있어서는 아무리 신중을 기하여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확인된 사실만 보도하겠다는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유럽의 언론은 위기인가?

: <미디어 다양성을 위한 유럽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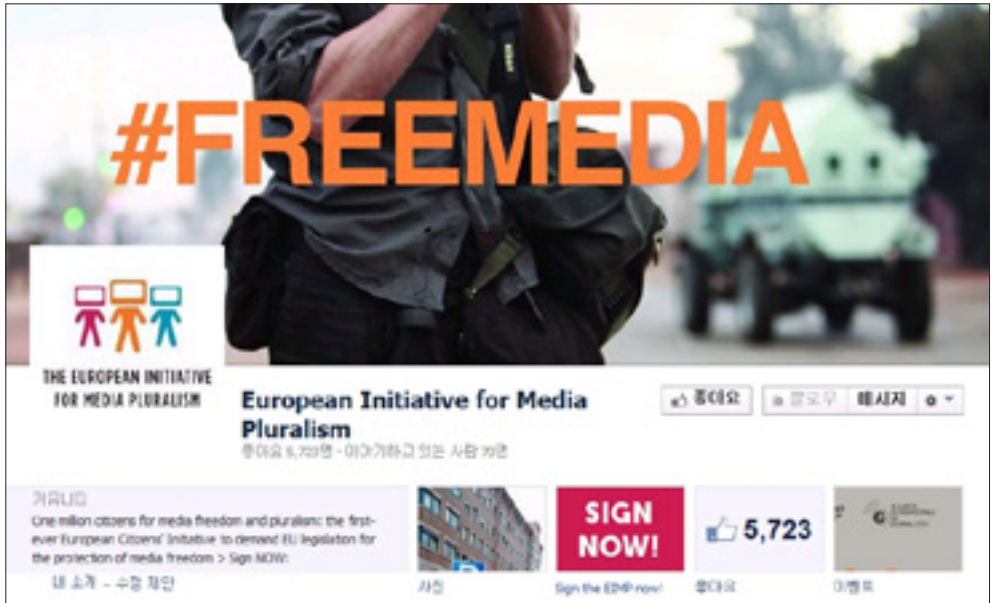
글 김세환
독일 만하임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박사과정

우리의 <언론중재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는 독일의 <언론평의회(Presserat)>는 지난달 홈페이지를 통해 <미디어 다양성을 위한 유럽 이니셔티브(The European Initiative for Media Pluralism)>를 소개하였다.

<유럽의 대안(European Alternative)>¹⁾과 <국제언론인연합(Alliance Internationale de Journalistes)>²⁾이 2010년부터 전개하고 있는 <미디어 다양성을 위한 유럽 이니셔티브>는 유럽 전역의 미디어 관련 조직, 회사, 직능단체와 공동으로 미디어 다양성을 위한 EU지침의 실행을 요구하는 <유럽 시민 이니셔티브 (European Citizens Initiative)>³⁾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 1) <유럽의 대안>은 18개국에서 수백 개의 지역 그룹과 파트너 단체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초국가 단체로, 유럽인들의 시민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해당 단체는 EU가 직면한 정치, 문화, 사회적 문제들을 더 이상 개별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민들, 풀뿌리 단체, 비공식적 기구들에게 유럽 차원의 운동을 전개하게끔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단체의 이니셔티브를 EU차원으로 확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 2) <국제언론인연합>은 미디어 전문가들의 의견과 언론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제안을 모으기 위해 언론인들에게 활동공간을 제공하는 단체이다. 단체의 목적은 집단 지성의 공고한 기반을 형성하고 구체적으로 언론인 개인적 차원, 전문가 차원, 집단 차원의 책임성을 재분배하여 구체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디어 종사자들을 연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3) <유럽 시민 이니셔티브>는 EU의 입법 권한이 보장된 문제에 한하여 EU시민이 직접 EU집행위원회에 법률을 제안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유럽의회와 위원회의 결정으로 시작된 해당 이니셔티브는 28개 가맹국 중 7개국 이상에서 최소 백만 명의 지지를 확보한 시안에 대해 바로 EU집행위원회에 입법 제안으로 이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The European Initiative for Media Pluralism 페이스북 메인 화면(<https://www.facebook.com/ECImedia>) 캡처

현재 <미디어 다양성을 위한 유럽 이니셔티브>의 제안자들은 EU집행위원회에 언론자유와 미디어 다양성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가맹국 별로 상이한 관련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미디어와 광고 분야의 소유 집중을 막기 위한 입법. 둘째,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된 감독 기구 창설. 셋째, 정언유착 회피를 위한 분명한 이해관계의 상충(conflict of interests) 조정 규정. 넷째, 가맹국 별 미디어 독립성과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EU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⁴⁾

이러한 <미디어 다양성을 위한 유럽 이니셔티브>에 대해 언론자유와 미디어 다양성이 잘 보장되고 있는 독일에서 <언론평의회>와 같은 공적 기관이 관심을 갖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물론 <언론평의회>가 언론피해구제 역할 이외에도 언론지침(Pressekodex), 편집 관련 데이터 보호 등 언론자유와 관련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해당 캠페인이 기관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진정 <언론평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야 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일면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미디어 다양성을 위한 유럽 이니셔티브>와 같은 EU 차원의 캠페인에 대한 공적 기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한 독일의 노력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나아가 남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된 경제위기 이후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에 따라 EU의 언론지평에 상당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유럽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4) <http://www.mediainitiative.eu/what-we-do/>

언론자유와 미디어 다양성에 대한 유럽 언론인들의 반성과 고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원고는 언론자유와 미디어 다양성에 대한 유럽의 현황을 살펴본 후, <미디어 다양성을 위한 유럽 이니셔티브>의 내용, 법적 근거, 그리고 의미와 한계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유럽의 언론지평

주지하다시피 유럽은 다른 대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언론자유를 누리고 있다.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유럽의 언론자유 지수에 따르면,⁵⁾ 2013년 29개국에 '자유(free)' 판정을 받았고, 12개국에 '부분적 자유(partly free)'를, 1개국에 '비자유(not free)' 판정을 받았다. 또한, 전체 유럽 인구 가운데 66%가 자유로운 언론환경 속에 살고 있고, 22%는 부분적 자유로운 환경에서, 12%는 자유롭지 못한 언론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13년 유럽 언론자유 순위⁶⁾

순위	국가	평점	등급	순위	국가	평점	등급	
1위	네덜란드	10	자유	21위	몰타	23	자유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웨덴				영국			
4위	벨기에	11		24위	리투아니아	24		부분적 자유
	핀란드				슬로베니아			
6위	덴마크	12		26위	키프러스	25		
	아이슬란드			27위	라트비아	27		
	룩셈부르크				폴란드			
	스위스			29위	스페인	28		
10위	안도라	13		30위	이탈리아	31		
11위	리히텐슈타인	14		31위	헝가리	35		
12위	모나코	15		32위	세르비아	37		
13위	에스토니아	16		33위	불가리아	39		
	아일랜드				몬테네그로			
	산마리노				35위	크로아티아	40	
16위	독일	17		36위	루마니아	41		
17위	포르투갈	18		37위	그리스	46		
18위	체코	20		38위	알바니아	49		
19위	오스트리아	21			코소보			
20위	프랑스	22		40위	보스니아	50		
				41위	마케도니아	57		
				42위	터키	62	비자유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평점 10점으로 유럽 내 최고의 언론자유를 보여주는 가운데 핀란드와 덴마크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과,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과 같은 소국들이 높은 언론

5) Freedom House (2014), Freedom of the Press 2014

6) Freedom House (2014), Freedom of the Press 2014, p.24 재구성

자유 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시민들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언론자유를 향유하고 있으며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에 상관없이 다양한 견해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고 있다. 해당 국가의 정부와 사회 역시 언론자유와 편집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있다.

비교적 높은 수준의 언론자유가 보장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현재의 유럽이 문제없는 것은 아니다. <프리덤하우스>에 따르면 유럽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전년 대비 언론자유 지수가 하락한 지역이다. 장기간의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는 유럽 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저널리즘 후퇴로 이어졌다. 게다가 유럽을 대표하는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의 언론자유 지수가 역대 중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들 국가는 대규모 언론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EU 내 의사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주요국의 부진한 언론자유 지수는 유럽 전체의 문제점으로 확산될 수 있다.

독일 : 정보기관의 사찰과 미디어 다양성의 감소

독일은 <프리덤하우스>의 언론자유 순위에서 18위(유럽순위 16위)를,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순위에서 14위를 기록하였다. 다른 유럽 주요 국가들에 비해 독일은 비교적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양 기관 모두에서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국경 없는 기자회> 순위에서는 전년 대비 세 단계 상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독일의 언론환경⁷⁾은 특정 부분에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보기관을 통한 언론인 감시 및 사찰 의혹이다. 니더작센(Niedersachsen)주에서 정보당국인 <헌법보호청(Verfassungsschutz)>이 극우주의자 조사를 명목으로 수년 동안 언론인을 사찰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인터넷에 대한 무제한적 감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검찰 역시 언론인들, 특히 심층보도를 담당하는 미디어의 데이터를 압수하였다. 2013년 7월 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경찰과 정보당국은 휴대폰과 이메일의 비밀번호, 클라우드(cloud) 서버와 변동IP주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졌다. 동시에 텔레커뮤니케이션 데이터의 보유에 대한 논쟁이 다시 점화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언론인들의 정보원에 대한 보호를 위협하고 잠재적 내부고발자의 행위를 저해하고 있다.

독일 미디어의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국경 없는 기자회>에 따르면 작년 독일 미디어 시장에서 신문의 인수, 합병, 폐간이 이어지면서, 지역신문 시장에서 단일 매체가 존재하는 지역이 증가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뉴스 출구가 단일 매체로 한정됨에 따라 정보와 의견의 다양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어지는 문제로는 연방 혹은 주 차원의 정보자유법에 근거한 요구들을 행정당국이 매우 느

7) Reporter ohne Grenzen (2014), Rangliste der Pressfreiheit 2014; Pressfreiheit in Deutschland.

리게 처리하거나, 고가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다. 또한, 적절한 정보보호법이 부재한 주가 여전히 5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이 공개해야 할 정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단일 법규가 부재한 것도 언론인들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견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밖에 네오나치, 이슬람근본주의자, 그리고 흉악범죄자들에 의한 언론인 공격도 계속되고 있으며, 경찰에 의해 집회와 시위에 대한 보도가 방해되고 있다. 그리고, 검찰은 이러한 환경에서 취재하고 있는 언론인들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였다.

프랑스 : 미디어 소유의 집중 심화

프랑스는 <프리덤하우스>에서 발표한 언론자유 순위에서 33위(유럽순위 20위)를,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는 31위를 기록하였다. 프랑스는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언론환경이 보장된 것으로 인식되지만, 산업자본에 의한 미디어 소유가 집중화되어 미디어 다양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건설업체 <브이그(Bouygues)>가 프랑스 최대 방송사인 <TF1>를 소유하고 있으며, 방산업체인 <다소(Dasault)>와 미디어·방산복합체 <라가르데르(Lagardère)>는 <르피가로(Le Figaro)>와 같은 여러 유력지를 통제하고 있다.

프랑스의 언론자유는 프랑스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사르코지(Sarkozy) 정부에서 취해진 여러 조치는 검열과 유사한 형태를 지닌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가령 내무부장관 시절의 사르코지에 대한 보도로 인해 <파리 마치(Paris Match)>의 편집자가 해고된 사안은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고 있으며, 형제라고도 묘사되는 <파리 마치>의 모기업 <라가르데르>의 회장과 사르코지 대통령이 관계는 정언유착의 의혹을 낳고 있다.

디지털미디어와 관련하여 광고비율의 삭감과 유럽위원회의 징수계획안 철회로 공적 미디어 서비스의 기금 조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미디어 내 공적 기금 조성은 정치권력과 미디어 엘리트 사이의 유착 관계가 유지되는 한 복원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미디어 그룹에 광고매출을 제공하는 여러 회사를 통제하

유럽의 언론자유 지도 ⁸⁾⁹⁾



8) Reporter without Border (2014), World Press Freedom Index 2014

9) 흰색(good situation) → 노란색(satisfactory situation) → 주황색(noticeable problems) → 빨간색(difficult situation) → 검정(very serious situation)

고 있으며, 2006년 제정된 반테러법 이후 정보당국의 인터넷 감시도 지속되고 있다.¹⁰⁾

영국 : 미디어 시장 내 과점화 현상

영국은 <프리덤하우스>에서 발표한 언론자유 순위에서 36위(유럽순위 21위),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29위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지난 몇 년간 이어진 미디어 업체 간 합병에 따른 것이다. 현재 영국의 상위 3개 전국 일간지가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가운데, 루퍼트 머독(Rupert Murdoch) 소유 회사가 이 중 30%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주요 업체들은 상호지분소유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머독 소유의 <21세기 폭스(21st Century Fox)>가 영국 Pay-TV의 선두업체인 <브리티시 스카이(British Sky)방송>의 39.1%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인수합병의 대다수는 지역 언론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일간지 발행 부수의 70%를 상위 5개 업체가 과점하고 있다.¹¹⁾

미디어 소유 규정은 1990년 방송법(Broadcasting Act) 이후 급격히 자유화되었으며 전화도청 스캔들과 이에 따른 <레비슨 청문회(Leveson Inquiry)>가 개최되기 직전, 정부는 지역 단위에서 교차 미디어 소유에 대한 모든 규정을 제거하였다.

한편, 영국은 2013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보여주었다.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명예훼손법의 개정이 통과된 것은 언론자유에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NSA와 영국정보기관의 사찰을 폭로한 미디어에 대한 영국정부의 대응은 언론자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영국의 정보당국은 테러 방지를 명목으로 해당 탐사전문기자 글렌 그린워드(Glenn Greenwald)를 구금하였으며, <가디언(Guardian)>지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였고, 잠재적으로 민감한 정보원 명단이 저장된 언론사의 하드드라이브를 파괴하였다.¹²⁾

이탈리아 : 정치권력에 예속

이탈리아는 <프리덤하우스>에서 발표한 언론자유 순위에서 64위(유럽순위 30위)를,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57위를 기록하였다. 순위에서 나타나듯, 이탈리아는 유럽 주요국 중 유일하게 언론자유 등급에서 '부분적 자유(partly free)' 판정을 받게 되어 언론자유가 위협받는 국가로 지목되었다.

이것은 전 총리이자 미디어 재벌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Silvio Berlusconi)가 장악하고 있는 방송환경에 기인한다.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소유 집중이 가장 강력한 국가이며, 주요 공영방송과 미디어 감시기구는 보조금과 사법체계를 통해 정치조직에 종속되어 있다. 또한, 언론 보도에

10) Open Society Foundation (2013), Report Mapping Digital Media: France.

11) Enders, C. (2012), Media Ownership Rules.

12) <http://www.mediareform.org.uk/resources>

대한 형사 소송이 빈번하여 언론인들이 종종 법적 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최근의 경제위기로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탈리아에서는 2012년 이후 많은 미디어 기업에서 대규모 해직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이탈리아 언론자유와 미디어 다양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다.¹³⁾

스페인 : 금융의 영향력 확대

스페인의 미디어 산업은 금융 기관의 영향력 증대가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은 미디어에 대한 광고와 대출을 통해 미디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페인 미디어 업체들은 수년간 금융 기관의 대출을 받아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방식은 미디어 산업의 거품을 양산하였고, 대출은 점차 악성 부채로 변함에 따라 저널리즘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다. 현재 스페인의 주요 금융 기관들은 미디어 업체의 자기자본 중 1/4를 직접 소유하고 있으며 미디어 시장 내에서 소유의 집중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경제위기 이후 신문의 광고 매출액은 60%까지 하락하였으며, TV의 경우에는 48%, 라디오는 33% 감소하였다. 그리고 2008년 이후 200여 개의 업체가 폐간하였으며, 미디어 산업의 실업률은 35%로 치솟았다.¹⁴⁾

〈미디어 다양성을 위한 유럽 이니셔티브〉의 내용

EU 가맹국의 입법 활동은 기본적으로 EU협약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하며, 이에 따라 미디어 다양성과 언론자유를 위한 규정도 EU의 〈시청각미디어 서비스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 Directive)〉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그러나 헝가리에서 미디어 위원회의 위원 선출이 집권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가맹국 미디어 감시기구의 독립성이 훼손됨에 따라 해당 규정에 대한 강화가 논의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EU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인 넬일리 크루스(Neelie Kroes)는 가맹국들이 EU의 법률 체계에서 운영될 때 EU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보았

〈미디어 다양성을 위한 유럽 이니셔티브〉 로고¹⁵⁾



13) Freedom House (2014), Freedom of the Press 2014

14) <http://en.rsf.org/press-freedom-index-2013.html>

15) <http://www.mediainitiative.eu/campaign-kit/>

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은 <미디어 다양성을 위한 유럽 이니셔티브>가 유럽의 언론자유와 미디어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역내 가맹국에 따라 상이한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조정하는 데 일차적 목적을 두는 것으로 반영되었다.

정보 기술의 발달로 현재 유럽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의 수와 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이러한 증가가 곧 미디어 다양성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여전히 가맹국 내 미디어 업체들은 소수의 정치권력 혹은 자본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보장해야 하는 미디어 감독 기구는 여전히 그 독립성을 의심받고 있다. 게다가 공영방송과 같은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정치 및 행정 분야의 압력은 여전히 강하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EU가 강조하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은 많은 도전에 직면해있다.

또한, EU협약에서 분명하게 다루고 있지 않은 미디어 관련 규정의 경우에는 가맹국에 따라 상이한 법률이 적용될 문제점도 있었다. 실제로 미디어 소유와 관련된 가맹국의 법률 해석은 독립적 기구에 의해 통제받는 공영채널의 수, 운영자금 등 출처의 명확성, 시청률 기준 등에 있어서 상이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미디어 독립성과 미디어 산업의 발전이라는 상반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맹국 별로 상이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미디어의 소유와 운영에 대해 투명성을 보장하는 규정 역시 가맹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EU기능협약(The Treaty on Functioning of European Union/TFEU)> 49조¹⁶⁾와 56조¹⁷⁾에서 규정하는 노동력,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역내 이동에 대한 보장을 침해하는 동시에,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Chap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11조¹⁸⁾ 1항과 <유럽인권조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10조¹⁹⁾ 의해 보호되고 있는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EU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훼손하였다.

만약 EU법의 상위 원칙에 근거하여, 가맹국 규정에 따라 내부 시장의 기능을 제한하는 법률을 무효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이로 인해 역내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혹은 재산권에 손상을

16) Freedom of establishment shall include the right to take up and pursue activities as self-employed persons and to set up and manage undertakings, in particular companies or firms within the meaning of the second paragraph of Article 48, under the conditions laid down for its own nationals by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such establishment is effected,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chapter relating to capital.

17)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acting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may extend the provisions of the Chapter to nationals of a third country who provide services and who are established within the Union.

18)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This right shall include freedom to hold opinions and to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without interference by public authority and regardless of frontiers.

19) 1.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This right shall include freedom to hold opinions and to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without interference by public authority and regardless of frontiers. This Article shall not prevent States from requiring the licensing of broadcasting, television or cinema enterprises. 2. The exercise of these freedoms, since it carries with it duties and responsibilities, may be subject to such formalities, conditions, restrictions or penalties as are prescribed by law and are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territorial integrity or public safety, for the prevention of disorder or crime, for the protection of health or morals, for the protection of the reputation or rights of others, for preventing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received in confidence, or for maintaining the authority and impartiality of the judiciary.

입힐 수 있다. 이것은 운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적 업체가 존재하는 다른 가맹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가맹국이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다양성의 보호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유럽사법재판소는 EU의 문화정책이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관련하여 최우선적 사안이라고 분명히 하였다. 이것은 미디어의 다양성 유지가 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연계되는 것으로, <유럽인권협약> 제10조에 의거하여 EU가 사법체계를 통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명시하였다.²⁰⁾ 또한, 재판소는 EU협약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적 경제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미디어 분야에 있어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인정된다고 보면서, 외부 압력으로 미디어를 보호하려는 가맹국들의 노력은 미디어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유지하려는 EU 차원의 공적 이익과 일치한다고 판단하였다.²¹⁾

요약하면 가맹국 별로 상이한 규정으로 인해 미디어 관련 규정의 복잡성이 증대하였으며, 개별 가맹국의 미디어 시장에 진입하려는 새로운 업체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였고, 미디어 업체의 주요 주주들이 정치적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미디어 다양성을 위한 유럽 이니셔티브>의 제안 배경이 되고 있다.

한편 <미디어 다양성을 위한 유럽 이니셔티브>는 보완원칙(subsidiarity)²²⁾을 존중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맹국의 규정과 절차들이 EU 차원에서 일관되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이라는 EU 차원의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EU가 미디어를 통해 도달하려는 통합 목적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에서 규정한 공통규정을 포함해야 하며, 이에 대해 개별 가맹국의 입법 시도는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디어 다양성을 위한 유럽 이니셔티브>는 가맹국이 미디어 분야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필요 조치를 채택해야 하며, 미디어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형성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것은 미디어와 정치권력 간의 밀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미디어 다양성을 위한 유럽 이니셔티브>는 독립적 기구를 설립하여 행정권을 행사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디어 다양성을 위한 유럽 이니셔티브>는 EU가 규정하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고, 미디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EU차원의 통일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가맹국 간 법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20) Stichting Collectieve Antennevoorziening Gouda and Others v. Commissariaat voor de Media

21) Michaniki AE v Ethniko Symbolio Radioteleorasis and Ypourgos Epikrateias

22) 특정 규정이 관계있는 특정 가맹국에서만 시행되는 방식

〈미디어 다양성을 위한 유럽 이니셔티브〉의 법적 근거

〈미디어 다양성을 위한 유럽 이니셔티브〉의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제시되었다. 먼저 〈미디어 다양성을 위한 유럽 이니셔티브〉는 EU가 추구하는 통합 정책에 부합하는 제안으로서 EU의 내부 기능을 형성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EU기능협약〉에 근거한다. 협약 2조²³⁾에 따르면 EU는 인간 존엄성, 법치,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에 근거하며, 이 가치들은 가맹국들에게 일반적인 부분으로 적용된다. 이것은 EU의 다양한 법령과 현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EU통합의 목적을 적시한 것이다. 일례로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전문은 EU가 위에서 언급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²⁴⁾ 한편, 협약 3조 3항²⁵⁾과 26조 1항²⁶⁾에 근거하여, 가맹국들이 EU의 내부 통합 시장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인정하고, 협약의 관련 규정을 개별 국가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디어 관련 가맹국 간 상이한 규정의 일치와 조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미디어 다양성을 위한 유럽 이니셔티브〉의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둘째, 〈미디어 다양성을 위한 유럽 이니셔티브〉는 EU가 목표로 하는 역내 문화적 다양성을 자신들이 내세우는 미디어 다양성으로 개념을 연계하여, 그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EU기능협약〉 167조²⁷⁾와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22조²⁸⁾에 의거하여 EU의 목표는 다양한 문화를 추구하는 것이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전문 12항²⁹⁾과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11조 2항³⁰⁾에 의거하여 미디어의 다양성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연계성을 찾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 다양성을 위한 유럽 이니셔티브〉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23) The Union is founded on the values of respect for human dignity, freedom, democracy, equality, the rule of law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including the rights of persons belonging to minorities. These values are common to the Member States in a society in which pluralism, non-discrimination, tolerance, justice, solidarity and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prevail.

24) Conscious of its spiritual and moral heritage, the Union is founded on the indivisible, universal values of human dignity, freedom, equality and solidarity; it is based on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It places the individual at the heart of its activities, by establishing the citizenship of the Union and by creating an area of freedom, security and justice...The Union therefore recognises the rights, freedoms and principles set out hereafter.

25) The Union shall establish an internal market

26) The Union shall adopt measures with the aim of establishing or ensuring the functioning of the internal market,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Treaties.

27) The Union shall take cultural aspects into account in its action under other provisions of the Treaties, in particular in order to respect and to promote the diversity of its cultures.

28) The Union shall respect cultural, religious and linguistic diversity.

29) The Commission adopted a Communication on the future of European regulatory audiovisual policy, in which it stressed that regulatory policy in that sector has to safeguard certain public interests, such as cultural diversity, the right to information, media pluralism, the protection of minors and consumer protection, and to enhance public awareness and media literacy, now and in the future.

30) The freedom and pluralism of the media shall be respected.

〈미디어 다양성을 위한 유럽 이니셔티브〉의 의미와 한계

경제위기 이후 미디어 분야의 경쟁력은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산업 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미디어 업체가 인수·합병·폐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에서는 소수의 거대 자본이 미디어 시장을 장악하는 집중화가 가속되고 있다. 소유의 집중과 매체의 감소,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감시 기능이 떨어지면서 유럽의 미디어가 과연 세대, 지역, 이념, 문화별 다양한 계층의 견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디어 다양성을 위한 유럽 이니셔티브〉는 미디어 다양성 회복을 위한 가장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다양한 정보와 견해를 지닌 미디어 생태계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부분이라는 점에서 〈미디어 다양성을 위한 유럽 이니셔티브〉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EU의 사법체계는 가맹국의 법률보다 상위에 있다. 예를 들어, EU 차원의 미디어 규정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은 실제로 각국의 미디어 체계와 법률을 규정하고, 제한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디어 다양성에 대한 EU 차원의 지침이 형성되면, 그것은 단순히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EU 가맹국 모두에게 구속력을 지니기 때문에 언론 분야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미디어 다양성을 위한 유럽 이니셔티브〉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분명하다. 첫째, 현재 EU 집행위원회에 입법제안을 위한 운동을 전개 중이지만 실제로 이것이 구체화될지는 불투명하다. 〈유럽 시민 이니셔티브〉 규정상 해당 제안이 채택되려면 최소 100만 명 이상의 동기가 필요하지만, 현재 〈미디어 다양성을 위한 유럽 이니셔티브〉의 지지자는 11만 4천 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따라서 극적인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미디어 다양성을 위한 유럽 이니셔티브〉가 EU 집행위원회에 상정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둘째, 미디어 다양성을 강조한 나머지 언론 경영의 자유와 사유 재산의 침해라는 부분을 소



유럽 신문 산업의 걱정을 풍자한 European Initiative for Media Pluralism의 삽화 (출처 : European Initiative for Media Pluralism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ECImedia>) 캡처)

홀히 다루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미디어 다양성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특정 계층의 견해를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임의로 시장의 상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시장 지배적 미디어들의 사유재산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결국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고찰이 부족한 것이다.

셋째, 미디어 다양성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 <미디어 다양성을 위한 유럽 이니셔티브>는 제안 취지와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미디어 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물론 <미디어 다양성을 위한 유럽 이니셔티브>가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법안 상정과 통과라는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아직 제안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시점에서 보면 시기상조일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많은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미디어 다양성을 위한 유럽 이니셔티브>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다양성을 위한 유럽 이니셔티브>는 유럽의 미디어가 처한 질적 문제점을 극복하고,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다시 기능하게끔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앞으로 <미디어 다양성을 위한 유럽 이니셔티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 담론이 유럽에서 형성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고충처리, 그리고 반론보도청구



글. 허중혁
변호사, TV조선

1. TV조선의 고충처리

(1) 고충처리 활동

필자는 2012년 4월부터 TV조선의 고충처리인에 임명되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TV조선의 경우 사내변호사가 고충처리인을 겸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고충처리인은 접수된 민원을 살펴본 뒤 관련 부서에 검토와 처리를 의뢰하게 된다. 먼저 해당 기사를 다룬 기자와 담

을 경청하고, 사안을 정리해 보도본부에 조언하기도 한다. 최종적으로는 처리 결과를 요약 기록해 두고 관련 법규에 따라 활동 내역을 뉴미디어팀에 보내 연간 1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고충처리인에 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인지 TV조선에 정식으로 신청되는 고충처리 건수는 일년에 한두 건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자체적 판단에 따른 여러 건의 적극적 예방 활동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미디

어정책과에서 실시한 운영 실태 점검에 따라 제도 운영 및 보완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행정적 처리, 뉴미디어팀과 함께 당사 홈페이지 고충처리인 난에 고충처리 청구서 및 고충처리인 운영규정을 게시하는 등의 필

수적인 일들을 수행했다.

한 언론사의 고충처리인이지만 한편으로 당사의 보도 관련 조정이나 소송의 대리인을 담당하면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쌓이는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당부서의 부장이 주도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회의도 열어 조치 여부와 방법을 상의한 뒤 보도본부장의 최종 허가를 받아 사안을 처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고충처리인은 내부 관계자 및 민원인의 말

그러나, 갈등의 해결방법과 관련하여 노하우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자주 절감하곤 했는데, 필자와 같은 법률가는 갈등의 해결 방법과 기술도 익힐 필요가 있으나 정식으로 교육을 받은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고충처리 및 언론구제와 관련하여 교육이나 연수의 기회, 자료 등을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언론중재위원회가 1년에 한 번씩 고충처리인 워크숍을 주최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2013, 2014년 2차례 언론중재위원회가 주최하는 고충처리인 워크숍에 회사를 대표해 참가하였고, 그러면서 다른 언론사의 고충처리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었다.



2014년 4월 25일 실시된 언론중재위원회 고충처리인 워크숍

(2) 고충처리 사례

지금까지 정식으로 접수되어 처리했던 고충처리의 사례를 들여본다면, 2012년에 있었던 외주업체 관련 사안부터 언급해야 할 것 같다. 당시 교양물 아시아헌터를 제작하여 방영하고 있던 회사는 그 제작을 외주업체에 맡긴 상태였는데, 촬영 장소였던 동남아 지역의 어느 교민으로부터 외주제작사가 아시아헌

터를 제작한다는 명목으로 교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민폐를 끼친다는 진정이 들어온 것이었다. 진정을 받자마자 제작사에 바로 전화를 하여 진정의 내용을 알리고 재발을 방지하도록 경고하였는데, 회사의 언론 보도로 인한 것이 아니라서 조금 당혹스러운 사안이었다. 그 외 고충처리로 성공적이었던 사안 2개는 금년 2014년에 있었던 일들이다. 1월경 예능물인 '강적들' 프로그램이 다루었던 과거 7공자 사건과 관련하여 언급되었던 모 종교단체가 자신들은 그 사건과 관련 없다는 이유로 정정을 요구해 온 사안에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 주는 쪽으로 합의함으로써 소송으로 가는 것을 미리 막았다. 그리고 4월경에는 뉴스7 프로그램이 보도했던 모 정당의 로고송 사용가격과 관련하여 로고송 제작업체가 해명을 요청한 사안에서, 그들이 '로고송의 가격이 수억원 대에 달한다'는 보도로 인하여 엄청난 항의전화를 받고 있음을 감안하여 해명보도를 해 주는 것으로 합의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했다.

2. 고충처리제도에 대한 건의

고충처리제도는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언론사 내에서도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4년 언론중재위원회가 주관한 고충처리인 워크숍에 참여했던 다른 언론사의 고충처리인 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아도, 각 언론사에서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나 인원은 다들 기피하는 자리이거나 보도업무에 비해 한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인식의 배경에는 적은 인원으로 격무를 감당해야 하는 언론사들의 열악한 현실도 작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당장에 진행해야 할 업

무가 쌓여 있는데 고충처리제도에 신경을 쓸 여유도 없고, 고충처리인 한 사람만 두면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라고만 생각하고 제도 자체에 대한 관심 자체가 적은 것으로 느껴졌다.



TV조선 홈페이지 내 고충처리인 제도 소개 페이지

그리고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를 비롯한 유관기관들도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1년에 한 번 메일로 감독을 하는 정도일 뿐, 직접 언론사를 방문하거나 구체적인 지도편달을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또한 각 언론사의 고충처리인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 등을 담당하는 유관기관을 찾아 보아도,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국가기관은 그다지 보이지 않고 그나마 언론중재위원회가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일이라 생각하지만, 국가기관들에 대해서는 입법만 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방치를 계속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방치상태가 계속되는 한, 각 언론사에서 고충처리인의 지위는 계속해서 형식적인 권한을 가

진 한직에 불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모든 직위와 역할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의무뿐만 아니라 권한이 있어야 하고, 권한이 있기 위해서는 인원과 예산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고충처리

제도의 당초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고충처리인의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그 전제로서 약간이라도 인원과 예산이 할당되어야 한다. 국가가 고충처리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인원과 예산을 조금이라도 지원해야 마땅하며, 만일 그러한 지원조차도 어렵다면 제도를 유지할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다. 최소한 언론사 내부에서라도 그러한 인원과 예산을 배분하

게 하는 내용의 입법 등 국가의 구체적인 지원과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3. 반론권의 남용 문제

(1) 반론권의 의의와 근거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는 고충처리인으로서 접수된 고충처리 사안을 처리하는 것에 크게 어려운 일이 없었다. 정작 필자가 난감했던 것은 사전에 고충처리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것도 아닌,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된 반론보도 사건의 해결이었다. 신청의 형식은 정정 및 손해배상의 청구였지만, 실제 그 내용은 반론보도에 불과했던 사안들도 여기에 해당한다. 신청인 중에는 기업들도 많았지만, 필자가 근무하는 언론사의 성격 때문에서인지 정치인들이 많았고 그 중에는 법

조인들도 있었다. 3년간 수십 건의 언론조정을 거치면서 필자는 국가기관과 정치인들이 신청하는 반론보도 자체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반론권 행사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단계에서 어느 정도 제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언급해 보고자 한다.

반론권은 무기대등의 입장에서 언론수용자인 국민의 반박기회 보장을 위한 한 형식이다. 헌법재판소도 반론권에 대한 합헌 결정에서 반론권 제도가 무기대등의 원칙에 있음을 강조했는데, 그 취지는 힘이 없는 개인이 거대한 언론을 상대하기 벅차기 때문에 이에 힘을 실어주는 형평성의 원칙을 실현하는 측면에서 합헌적이라는 것이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도 반론보도청구권의 인정 이유와 헌법적 근거로 “반론보도청구권은 첫째,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도 신속·적절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이 주어져야 함이 마땅하고, 특히 공격내용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끔 보도된 매체 자체를 통하여 방어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고 형평의 원칙에도 잘 부합할 수 있으며, 둘째, 독자로서는 언론기관이 시간적 제약 아래 일방적으로 수집·공급하는 정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반대 주장까지 들어야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대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진실발견과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취지에서 인정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2) 반론권의 입법례와 제도에 대한 비판

반론보도청구권은 문제된 언론보도의 진위 여부를 불문하며, 언론이 스스로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작성한 보도문을 무료로 보도할 의무만을 진다는 점에서 연혁적으로 볼 때 서구의 반론권 제도를 입법화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프랑스에서의 반론권은 인쇄매체에 부과한 의무사항이었으며, 방송은 처음에 의무에서 제외했으나 1972년부터 법을 개정하여 방송에 대해서도 반론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다만 아직도 프랑스에서 방송에 관한 반론권의 대상과 범위는 인쇄매체에서보다 훨씬 제한적이라고 한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에서는 일관하여 반론권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를 보여 왔고 반론권에 대한 일반 법률도 거의 사라졌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 주는 1913년 선거규정에 일부로 반론권 보호 법률을 제정한 바 있었으나 1974년 미 연방대법원은 이 법률이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사례가 있다(Miami Herald Publishing Co. v. Tornillo). 또한 일본의 경우도 반론권을 직접적·명시적으로 법제화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1974년 공산당이 산케이신문을 상대로 반론문의 무료제재를 구한 사안에서도 최고재판소가 반론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도 반론보도청구 제도 자체를 비판하는 견해들이 꾸준히 있어 왔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이 제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반론권의 부여가 언론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에서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반론권은 사실이 아닌 보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에도 반박을 인정하는 권리여서 사실보도를 기본으로 하는 언론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¹⁾ 더욱이 자유로운 참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인터넷에까지 반론권을 인정하는 것은 인터넷의 본질적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으며, 인터넷의 경우 ‘반론에의 액세스(access)’가 용이하다는 점을 근거로 인터넷을 통한 표현행위와 오프라인상의 표현행위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주장되고 있다.²⁾

(3) 공권력 기관의 반론권 남용의 문제

반론보도의 청구적격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적격을 인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권력 기관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절제해서 행사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이러한 공권력 기관이 기본권의 주체라기보다는 수범자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나 국가기관이 일반 국민과 동일한 수준에서 언론기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고자 나선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반론권의 인정근거에 비추어 볼 때 그다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또 공적 기관으로서의 언론사가 다른 언론에 의해 비판을 받는 경우에는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수인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도 나와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일반 국민과 달리 여러 경로를 통해 언론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공권력 기관은 최대한 반론권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필자는 일반 국민들이 언론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에 언론사를 상대로 대등한 방어수단으로서의 반론권 행사를 하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내용상 정확한 사실보도에 대해 반론보도가 되었다는 이유로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바와 같이 언론사가 사실을 왜곡한 것처럼 오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특히 그러한 반론권의 행사가 일반 국민과 달리 월등한 방어수단을 보유한 정치인과 공권력 기관에 의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다. 사실 그대로를 보도한 기사 자체에 아무 문제도 없고, 더욱이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자들이 몇 번이나 인터뷰를 요청한 경우에도 거절과 회피로 일관했던 이들이 향후에 보도가 되고 나니까 불현듯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행태를 받아주는 것은 언론사의 보도의 자유를 심히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반론권의 행사가 남용되고 있다 보니, 실제 현실에서 일반인들이 반론권의 의미를 매우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신호도 감지되고 있다. 모 국회의원이 자신에 관한 반론보도를 조정 신청하면서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한 사례가 있었는데, 과연 이러한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의문과 함께 법률가도 이렇게 반론권을 행사할 정도라면 일반인들은 반론보도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언론사가 매우 잘못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실제로 당사가 반론보도를 수용해 준 사안

1) 한위수, 새 언론중재제도의 성과와 개선점, 언론중재 통권 101호, 2006, pp.5-20.
2) 신평, 언론법, 삼영사, 2007.

들에 있어 신청인이었던 일부 기업들은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라는 문구를 적극 이용하여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 경우도 목격되곤 한다.

4. 언론중재위원회에 건의

우선 글을 기고할 기회를 준 언론중재위원회에 감사를 표하면서, 이번 기회에 언론중재위원회에 두 가지를 요청하고 싶다. 그것은 손해배상이 신청된 사안에서 위법성조각사유를 적극 적용해 주는 것과 정정보도가 신청된 사안에서 반론보도에 의한 합의 종결을 지양해 달라라는 것이다. 필자의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조정 참여경험으로는, 언론사의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중재위원회는 법원보다도 위법성조각사유를 협소하게 적용하고 있고, 정정보도가 신청된 사안에 대해 조정 성립을 위해 반론보도 정도로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언론사의 보도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으면 응당 정정하는 것이 타당할 뿐, 합의를 위해 적당히 반론보도로 마무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무리하게 제기된 반론의 신청이 쉽사리 수용됨으로 인하여 일반 시민이 아닌 정치인이나 기업인의 이익이 신장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도 의문이며, 사실을 보도하고도 조정이나 소송을 당해야 하는 기자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방어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당사 기자들의 취재를 방해함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촬영장비를 부수기까지 했던 단체가 신청한

조정이 합의를 위해 반론보도로 종결된 경우도 있었는데, 과연 이러한 단체를 위해 언론사가 반론보도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다.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중요 사안과 관련한 공익적 목적에서 당연히 실명 보도해야 할 공인에 관한 보도조차 망설이게 되고 보도를 하더라도 그나마 익명처리 하는 일들이 적지 않으므로, 향후 언론중재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여 반론보도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미 법원도³⁾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라 함은 신청인이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내용에 관해 이미 원문 기사와 같은 비중으로 충분한 보도가 이루어져 반론보도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와 반론보도를 요구하는 내용과 원문 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반론보도를 제한하는 일응의 기준을 확립한 상태이므로, 차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도 이러한 기준이 참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부족한 글을 마친다.

3) 서울고등법원 2005나100290 판결,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 참조

편작이 인정한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제도



글. 김순중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2013년 조정성립률 91% 경제적 성과 718억 원

중국 최고의 명의 편작의 고백

중국 최고의 명의로 편작과 화타가 입에 오르내린다. 화타는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와 조조를 직접 치료한 명의로 대략 AD 200년대 사람이다. 화타보다 한 수 위로 보이는 편작은 BC 550~600년대 사람으로 다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었던 천하제일의 명의로 칭송받았다. 그 당시 왕이 직접 편작을 만나서 그 업적을 칭송하였다.

하지만 편작은 자신은 그리 유능하지 않은 의사라고 하면서 자신의 큰 형과 둘째 형이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명이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이에 왕은 두 사람이 뛰어난 명의인데 어째서 사람들은 두 사람은 전혀 모르고 편작만 천하 명의라고 알고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편작은 형은 병이 나기 3년 전에 병날 것을 미리 알고 음식 등으로 처방하여 건강하게 살도록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혀 고맙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둘째 형도 병이 나기 직전에 처방하여 건강을 유지하도록 했기 때문에 환자들도 둘째 형의 고마움을 알기 어렵다고 했다. 반대로 자신은 병이 깊은 환자를 진단하고 약으로 처방하기 때문에 환자들로부터 높은 명성을 받지만, 의사의 입장에서는 두 형에게 비길 수 없다고 했다.



최악의 조정이 최선의 재판보다 낫다

불공정 거래 행위 등으로 거래 질서가 훼손되고 피해를 본 당사자들은 2008년 2월 공정거래조정원이 설립되기 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로 판단 받았을 경우, 피신고인은 시

정명령, 과징금, 검찰 고발 등의 처벌을 받지만, 피해를 본 당사자는 피해 구제를 소송으로 해결해야만 했다. 하지만 소송으로 피해 구제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막대한 소송비용과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여야만 했다.

앞의 예에서 병이 깊어지고 난 뒤에 과징금 등의 처벌과 막대한 소송비용 등으로 거래 질서를 회복한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작이 했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불공정거래 등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가 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무료로 신속하게 소송을 거치지 않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 가맹, 하도급, 유통, 약관의 5개 분야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여 2013년에 1,814건을 처리하면서 조정성립률 91%를 달성하였다. 평균 사건처리기간도 42일로 소송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무료로 처리하였고 이로 인한 경제적 성과도 718억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상거래 분쟁이 더 커지기 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 조정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예를 든 편작형들의 역할을 조정원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송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를 받은 당사자들은 통상적으로 더 이상 거래가 계속되기 어렵지만, 조정원의 조정을 거친 기업들은 계속 거래를 한다는 점에서 조정 제도의 장점은 더욱 빛이 난다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최악의 조정 결과가 최선의 재판 결과보다 낫다는 것은 법조계에서 널리 회자되는 격언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설립 배경 및 업무분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2007년 8월 제14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에서 다룬 법 위반행위에 비해 사적 분쟁의 성격이 강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2007년 12월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이다.

이로써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당사자들은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서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조정원이 설립된 지 7년이 지난 현재 조정원에는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http://www.kofair.or.kr>)

도급,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분야에 관한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정원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산업의 분석 및 거래행태에 대한 조사·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공정거래법 집행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2001년부터 처음 도입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효과적인 운영·발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CP도입기업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 및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등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다른 사업도 담당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 기관으로서 각국의 관심 대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는 행정부가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행정부에 의한 기업 간 분쟁조정을 금기시하고 주로 사법부나 민간단체에 의해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는 불공정거래행위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거래, 하도급,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등 전반적인 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한다는 점에서 해외 관련 기관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하다.

또한, 외국의 조정은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질 경우 당사자 수익 부담의 원칙에 의해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 무료로 조정을 신속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조정 결과가 축적되기 때문에 조정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다른 나라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조정전문기관이다.

최근에는 조정원을 방문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분쟁조정제도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변호사협회 등에서도 조정원을 방문하여 조정제도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분쟁조정 분야

2014년 현재 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분야 등 총 5개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에서 하도급, 가맹, 유통, 약관이 파생되었기 때문에 불공정거래의 유형이나 특성이 같다고 볼 수 있다.



조정원을 방문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표단

다만 하도급법상 미지급대금이나 부당감액 등의 대금지급명령이 강제되어 있어 하도급분쟁조정 성립률이 높은 것이 하나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분쟁조정 대상 및 유형〉

구분	조정대상	주요분쟁유형
공정 거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위반행위로 인한 사업자 간 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의 거래거절 • 거래상 지위 남용 • 거래강제 • 사업활동 방해 등
가맹 사업 거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과장정보 제공 • 영업지역 침해 등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하도급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대금 미지급 • 부당반품 등 • 부당한 대금감액
대규모 유통업 거래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한 수령거부/지체 • 판촉비 부담전가 등 • 상품의 부당한 반품
약관	약관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및 이와 비슷한 유형의 불공정 약관 관련 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의 약관 • 부당하게 계약해지, 해제권을 제한하는 약관 •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그 위험을 전가시키는 약관

분쟁조정제도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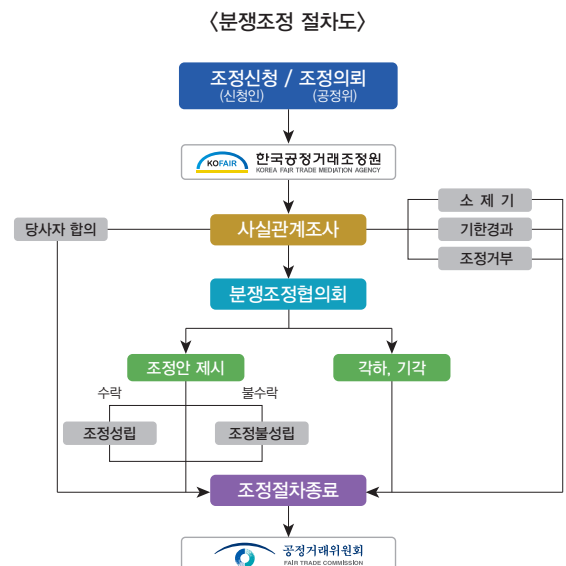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조정원에 직접 신청하거나, 공정위가 신고된 사건 중 조정대상이 되는 사건을 조정 의뢰하면 조정신청이 된다.

조정신청 후 처리절차는 크게 4단계로 볼 수 있다. 첫째 사실관계조사, 둘째 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의결, 셋째 당사자 수락 여부 결정, 그리고 공정위 보고가 마지막이다.

먼저 사실관계의 조사는 답변서 제출요구, 서면 자료 검토, 출석조사 등으로 이루어진다.

사실관계 조사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면 사안은 조정종료가 된다. 당사자가 조정이 안 될 경우 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안이 결정되고, 그 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성립, 일방이라도 불수락하면 조정이 불성립된다.

이러한 조정의 성립 여부 등은 공정위에 보고되며 조정이 성립되고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면제된다.



분쟁조정 효력

조정원의 조정제도를 통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양 당사자 간에 민사상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고, 대부분 조정내용의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극히 일부 조정내용이 불이행되는 경우에 조정원은 해당 사건을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식 절차에 따라 조사를 하게 된다.

특히 공정거래와 가맹사업거래 분야에 있어서 조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내용을 3년간 2회 이상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상습 조정결정 불이행업체'로 분류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받게 된다.

그리고 하도급법상 조정성립이 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조치가 될 수도 있다.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 현황

조정원은 2008년 업무 개시 이래 2013년까지 총 6,381건의 사건을 접수하여 6,089건을 처리한 결과, 조정성립률이 81%에 이르며, 특히 2013년에는 91%의 높은 조정성립률을 달성하였다.

또한, 조정성립에 따른 경제적성과(피해구제액과 절약소송비용의 합계금액)는 총 1,888억 원에 달한다.

조정원 출범 당시인 2008년과 2013년의 분쟁조정 실적을 대비하여 보면 사건처리는 2008년에 433건, 2013년에 1,814건을 처리하여 연평균 33.8%의 비율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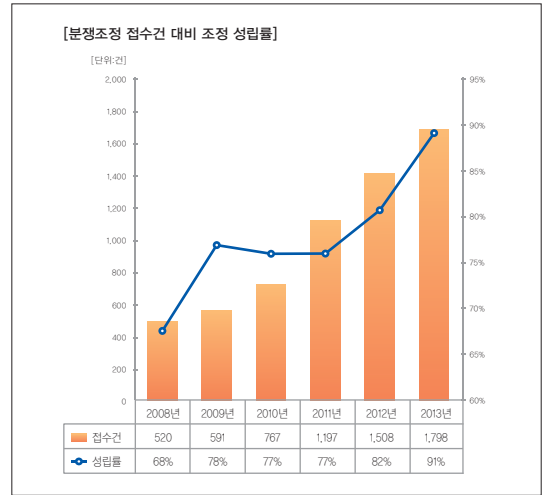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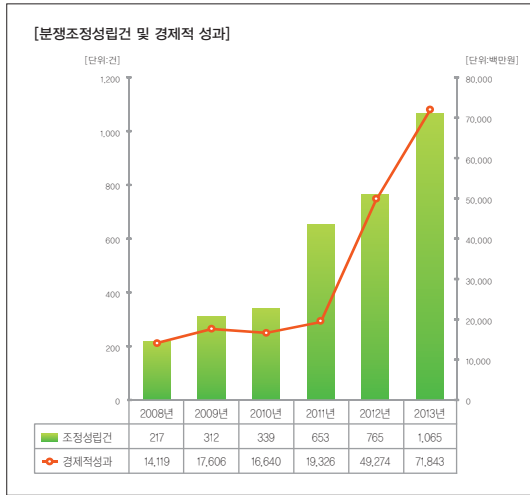
사건의 평균처리 기간은 2008년 63일에서 2013년 42일로 큰 폭으로 단축했고, 조정성립률도 2008년 68%에서 2013년 91%로 23%포인트 증가시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분쟁조정사건을 처리하였다.

그리하여 2008년 141억 원이었던 경제적 성과가 2013년에는 718억 원으로 5.1배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실적〉

(단위: 건, 기간: 2008.1.1.~2013.12.31.)

구 분	접 수 (증가율)	처 리 (증가율)	조정절차완료				기각, 조정중단 등
			성 립	불성립	계	성립률	
합 계	6,381	6,089	3,351	769	4,120	81%	1,969
2008년	520	433	217	103	320	68%	113
2009년	591 (30%)	581 (34%)	312	89	401	78%	180
2010년	767 (30%)	706 (22%)	339	99	438	77%	268
2011년	1,197 (56%)	1,130 (60%)	653	200	853	77%	277
2012년	1,508 (26%)	1,425 (26%)	765	170	935	82%	490
2013년	1,798 (19%)	1,814 (27%)	1,065	108	1,173	91%	64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주요 분쟁조정 사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정이 성립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사례 1 원유정제처리업자의 계약위반 관련 분쟁에 대한 건

| 분쟁개요 |

- 신청인(산업용가스 제조업자)은 피신청인(원유정제처리업자)과 2007. 5. 10. 수소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장기 계약(계약기간 20년)을 기초로 초기 투자비용 약 100억 원을 투자하여 공장을 신축하였다.
- 그런데 피신청인이 기본계약 내용에 따른 양에 훨씬 못 미치는 수소만을 신청인으로부터 구매하자, 신청인은 초기 투자비용의 약 50%밖에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 조정결과 |

- 조정원은 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기본계약의 내용보다 훨씬 낮은 단가, 적은 물량을 적용하여 수소를 구매함에 따라 신청인이 손실을 입게 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이에 조정원은 합리적인 단가와 구매수량을 산정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6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2 편의점 가맹본부의 심야영업 강요의 부당성 관련 분쟁

| 분쟁개요 |

-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피신청인(편의점 가맹본부)으로부터 주변 상권 현황과 통행량, 이 사건 가맹점의 예상 매출액 관련 정보가 기재된 ‘상권 분석 보고서’를 제공받고 2013년 1월경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 그러나 신청인이 가맹점을 운영하는 약 2개월 동안의 실제 매출액이 상권 분석 보고서에서 피신청인이 제시

한 월 예상 매출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다.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면서 상권조사 시에는 심야 통행량을 조사하지 않은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영업시간을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 조정결과 |

- 조정원은 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을 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제 공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신청인이 계약해지보다 가맹점의 지속적인 운영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매 월 전기료를 전액 지원하고, 신청인 가맹점의 영업시간을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조정하라”는 내용의 조정 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3 종합건설업자의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

| 분쟁개요 |

- 피신청인(원사업자)은 2011년 11월경에 신청인(수급사업자)에게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위탁하였다.
-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급받으면서 자재구입비, 준비금 등의 명목으로 공사 시작 전에 일부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받았고, 공사진행 중에는 물가상승을 이유로 자재비나 인건비에 대한 공사 대금을 추가로 지급받았으나 신청인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공사를 2012년 1월경에 모두 완료하였으나 신청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조정결과 |

- 조정원은 원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자로부터 공사준비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수급사업자의 공 사대금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도급법에 규정되어 있고, 신청인이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였 음에도, 피신청인이 공사준비금 등을 미지급한 행위는 하도급법에 비춰볼 때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물가상승에 의한 공사대금 변동분 등 합계액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법원연계 조정업무 수행

조정원은 2012년 7월부터 전문성을 인정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연계형 분쟁조정 전문기관으로 지정 되어 법원에 소개기된 분쟁에 대해서도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2년 총 37건을 접수, 32건을 처리하여 34%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하였고, 2013년에는 127건을 접수, 120건을 처리하여 32%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하였다.

분쟁조정상담 및 무료법률상담

조정원은 6년간 22,118건의 분쟁조정상담을 하였는데, 특히 2013년은 2008년 1,755건 대비 4.2배 증가한 7,361건을 상담하였다.

그리고 2010년 개시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도 2013년까지 4년간 3,350건의 상담을 실시하여 영세 중소기업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장연구 및 위탁사업 수행

한편 조정원은 자체 박사급 연구인력으로 구성된 시장연구실과 경쟁정책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그룹인 법정제분석그룹 “LEG”의 운영을 통해 주요 공정거래 이슈들에 대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경쟁 당국의 효율적인 법 집행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 이래 LEG학술연구과제 53건, 외부 정책연구용역 10건, 자체연구 9건, 수탁연구용역 1건 등 총 73건의 연구를 완료하는 실적을 올렸다.

그리고 조정원은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심사등록 업무 그리고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위탁 수행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구제의 최고 전문기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 시 90% 이상이 시정조치나 소송보다는 화해를 전제로 한 조정으로 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은 시정조치나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해결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고, 조정원이 그 중심에 서서 시대적 흐름을 이끌어야 하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 조정원은 더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피해를 보고도 조정원을 몰라서 구제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자들이 없도록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조정성립률을 제고하여 우리나라 최고의 불공정거래행위 분쟁해결 기관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조정전문기관으로서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할 것이다.

'조정중재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DR 교육

협상, 조정, 중재 등 소송을 대체하는 분쟁해결제도인 ADR 기법에 관하여 공무원, 교사, 법조인, 기업 임직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언론피해 예방교육

언론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언론분쟁의 해결방안과 예방법에 대한 교육

인턴십 프로그램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에 대한 법적 소양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공정한 언론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이런 일을 합니다.]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식선거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예 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 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불공정 보도라고 판단될 경우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결정문 등의 게재 또는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일 : 2014년 7월 30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14년 5월 31일부터 2014년 8월 29일까지 운영됩니다.”



불공정 보도로 인한 선거후보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기사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 의결하여 시정요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결정문 등의 게재 또는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리고, 시정 요구 사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각, 각하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선거후보자와 언론사의 반론보도청구회부사건을 심의합니다.

선거기사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정당의 경우 중앙당)는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후보자나 언론사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인용 또는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